

1. 개정 이유

동물 보호·복지 증진을 위한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정비*하는 내용으로 「동물보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8853호, 2022.4.26. 공포, 2023.4.27. 시행(일부는 2024.4.27.)됨에 따라, 세부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보호 중인 동물 반환 시 사육계획서 제출 의무화, 반려동물 영업 제도 정비 및 제재 강화,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신설 등

2. 주요내용

가. 소유자등의 반려견 동반 외출 시 안전관리 확대(안 제11조 변경)

- 1) (제·개정 주요내용) 등록대상동물 동반 외출 시 이동장치를 사용할 경우 반려견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추도록 하고, 등록대상동물을 안는 등 이동을 제한해야 하는 공간으로 ‘오피스텔 등 준주택’ 추가
- 2) (제·개정 사유) 개물림 사고 방지 등을 위한 소유자등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

나. 피학대동물의 격리조치 기간 확대(안 제15조 변경)

- 1) (제·개정 주요내용) 지자체장이 소유자로부터 학대받은 동물을 보호할 때 수의자의 진단에 따라 소유자로부터 해당 동물을 격리 조치 해야 하는 기간을 종전의 ‘3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강화함
- 2) (제·개정 사유) 피학대동물의 적절한 치료 및 소유자로부터 격리

등을 위한 기간 확보 및 학대 재발 방지

다. 동물보호센터 종사자등 교육 도입에 따른 절차 등 규정(안 제17조 신설)

- 1) (제·개정 주요내용) 동물보호센터의 장 및 그 종사자는 동물보호 법령, 동물의 사육·관리 및 질병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을 연간 3시간 이상 교육받도록 함
- 2) (제·개정 사유)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상시 보호·관리 하는 현장 종사자들의 관련 역량 증진

라.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에 따른 관련 기준 등 규정(안 제23조 신설)

- 1) (제·개정 주요내용) 개정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자체에 신고한 민간 동물보호시설 운영자는 유실·유기동물등의 적절한 보호·관리를 위한 시행규칙 별표 7 및 별표 8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 2) (제·개정 사유) 민간시설에서의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 보호 여건 개선

마. 피학대동물 반환 시 사육계획서 제출 의무화에 따른 절차 등 규정(안 제26조 신설)

- 1) (제·개정 주요내용) 지자체장이 보호조치 중인 동물을 반환받으려는 소유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사육계획서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지자체 동물보호관은 관련 상담 및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함
- 2) (제·개정 사유) 구조동물의 반환 후 적절한 사육·관리 방법 준수와

함께 확대 재발 방지 등을 도모함

바. 사육포기 동물의 지자체 인수제 도입에 따른 관련 기준 등 규정

(안 제28조 신설)

- 1) (제·개정 주요내용) 지자체장이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할 수 있는 사유를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요양, 병역 복무, 재난으로 주택 등이 파손된 경우 등으로 구체화함
- 2) (제·개정 사유) 소유자의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동물유기 등의 문제를 방지하되, 무분별한 인수 신청 방지

사. 동물실험 변경심의 신설에 따른 관련 기준 등 규정(안 제32조 변경)

- 1) (제·개정 주요내용) 개정법률 제51조제4항에 따라 동물실험시행 기관이 윤리위원회로부터 동물실험에 관한 변경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유를 연구책임자 변경, 사용마릿수 증가 등으로 규정함
- 2) (제·개정 사유) 동물실험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 윤리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여 실험동물 보호 강화

아. 등록대상동물의 거래내역 신고제 도입에 따른 절차 등 규정

(안 제51조 신설)

- 1) (제·개정 주요내용) 개정법률 제80조에 따라 동물생산·수입·판매 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취급하는 경우 그 거래내역을 매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거래내역을 2년간 보관하도록 함
- 2) (제·개정 사유) 영업 단계에서 반려견의 투명한 거래질서 구축 및 관련 통계 기반 확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해당없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맹견의 범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가 목에 따른 맹견(猛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를 포함한다)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제3조(반려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개, 고양이, 토끼, 페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한다.

제4조(동물복지위원회 위원 자격) 법 제7조제3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

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2.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로서 동물보호·동물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으로서 그 사람을 위촉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축산단체 대표로서 동물보호·동물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동물보호·동물복지를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7. 그 밖에 동물보호·동물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적절한 사육·관리 방법 등)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동물의 적절한 사육·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2.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허가, 면허 등을 받은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동물의 처리에 관한 명령, 처분 등을 이행하기 위한 경우

② 법 제10조제2항제1호 단서 및 제2호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행위인 경우
2. 법 제47조에 따라 실시하는 동물실험인 경우
3. 긴급 사태의 발생으로 해당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인 경우

③ 법 제10조제2항제3호 단서에서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10조제4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관리 또는 보호의무”란 별표 2에 따른 사육·관리·보호의무를 말한다.

⑤ 법 제10조제5항제1호 단서에서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가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4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이하 이 항에서 “사진 또는 영상물”이라 한다)에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과 해당 목적을 표시하여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경우
2. 언론기관이 보도 목적으로 사진 또는 영상물을 부분 편집하여 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경우
3. 신고 또는 제보의 목적으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사진 또는 영상물을 전달하는 경우

⑥ 법 제10조제5항제4호 단서에서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건의 대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건을 대여하는 경우
2. 촬영, 체험 또는 교육을 위하여 동물을 대여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동물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대여하는 기간 동안 제5조에 따른 적절한 사육·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7조(동물운송자)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영리를 목적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

1호에 따른 자동차를 이용하여 동물을 운송하는 자를 말한다.

제8조(동물의 도살방법)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말한다.

1. 가스법, 약물 투여
2. 전살법(電殺法), 타격법(打擊法), 총격법(銃擊法), 자격법(刺擊法)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도살방법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도축하는 경우에 대하여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9조(동물등록 제외지역)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수 있는 지역으로 정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島嶼,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 및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한다]
2.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면

제10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사항 및 방법 등)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동물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동물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11조2항에 따른 동물등록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11조(안전조치) 소유자등은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등록대상동

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할 것. 다만, 소유자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2. 제1호 본문에 따른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는 2미터 이내일 것

3. 제1호 본문에 따른 이동장치는 등록대상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출 것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간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등록대상동물의 이동을 제한할 것

가.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나.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다.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제12조(인식표의 부착) ①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등록대상동물의 이름
2. 소유자의 연락처
3. 동물등록번호(등록한 동물만 해당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인식표의 재질 및 규격, 부착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13조(보험금액) ① 영 제13조제3항제1호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상해등급에 따른 금액”이란 별표 4 제1호의 상해등급에 따른 보험금액을 말한다.

② 영 제13조제3항제1호다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후유장애등급에 따른 금액”이란 별표 4 제2호의 후유장애등급에 따른 보험금액을 말한다.

제14조(구조·보호조치 제외 동물)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도십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中性化)하여 포획장소에 방사(放飼)하는 등의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를 말한다.

② 제1항의 동물에 대한 세부적인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5조(보호조치 기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소유자등으로부터 학대받은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수의사

의 진단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보호조치 하되 5일 이상 소유자등으로부터 격리조치 하여야 한다.

제16조(동물보호센터의 시설 및 인력 기준) 법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이란 별표 5과 같다.

제17조(동물보호센터의 장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의 장 및 그 종사자는 연간 3시간 이상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며, 원격교육으로 그 과정을 대체할 수 있다.

1.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른 대한수의사회
 2. 영 제6조 각 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3.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교육전문기관
 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 ③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동물보호 관련 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동물의 보호·복지에 관한 사항
3. 동물의 사육·관리 및 질병예방에 필요한 사항

4.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교육기관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교육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기록을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하 “동물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유지·관리하고, 교육이 끝난 날부터 2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법 제35조제6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이란 연간 구조·보호되는 동물의 마릿수가 1천마리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②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에 설치하는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동물보호센터의 사업계획 및 실행에 관한 사항

2. 동물보호센터의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 법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사항

제19조(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물보호센터의 장이 위촉한다.

1.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2.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으로서 그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촉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운영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2.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으로서 동물보호센터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3. 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으로서 동물보호센터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⑤ 동물보호센터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매년 1회 이상 소집하여야 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 법 제35조제7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은 별표 6과 같다.

제21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동물보호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고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5의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자료
2. 동물의 구조·보호조치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의 명세서
3. 동물의 구조·보호조치에 종사하는 인력현황
4.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지정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별표 5의 지정기준에 가장 적합한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동물보호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6조의 시설 및 인력 기준과 제20조의 준수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④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연 1회 이상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동물의 보호비용 지원 등) ①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동물의 보호비용을 지원받으려는 동물보호센터는 동물의 보호비용을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청구받은 경우 그 명세를 확인하고 금액을 확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민간동물보호시설의 운영신고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민간동물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별표 7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동물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의 명세서
3. 동물의 보호조치에 종사하는 인력현황
4. 동물의 보호 현황
5. 보호시설 운영계획서(법 제37조제4항의 시설·운영 기준 준수여부 및 사후관리를 위한 계획을 포함한다)

②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보호시설의 운영자(이하 “보호시설운영자”라 한다)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민간동물보호시설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시설기준을 검토하여 적합할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37조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운영 기준”이란 별표 7의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시설 기준 및 별표 8의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운영 기준을 말한다.

⑤ 보호시설운영자가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보호시설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영구적으로 폐쇄 또는 그 운영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일시운영중단·영구폐쇄·운영재개 신고서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보호동물 관리(처리) 계획서를 첨부하여 일시운영중단·영구폐쇄·운영재개 30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운영중단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어 운영재개할 때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24조(동물검사 등)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동물의 학대 여부 판단 등을 위한 동물검사 의뢰 접수, 검사, 결과 통보 방법·절차 및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5조(광고) 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동물 보호조치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동물보호 광고문을 작성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16조에 따른 공고내용을 별지 제13호서식의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와 별지 제14호서식의 보호동물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동물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사육계획서)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동물(이하 이 조에서 “동물”이라 한다)을 반환받으려는 소유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학대방지 사육계획서를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육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유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처
2. 동물이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인 경우 그 등록 정보
3. 동물의 사육·관리 방법 및 그 이행계획(동물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그 계획을 포함한다)

③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동물을 반환받으려는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사육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상담 및 자문을 할 수 있다.

제27조(보호비용의 납부) 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동물의 보호비용을 징수하려는 때에는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비용징수통지서에 따라 통지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징수통지서를 받은 동물의 소유자는 비용징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호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비용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동물의 소유자가 제2항에 따라 보호비용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지된 비용에 이자를 가산하되, 그 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④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비용은 수의사의 진단·진료비용 및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비용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8조(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자신이 소유하거나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동물의 사육을 포기하려는 소유자등은 별지 제17호서식의 동물 인수신청서를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동물에 대한 보호비용 등을 청구할 경우 그 청구비용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③ 법 제44조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소유자등이 다른 방법으로는 정상적으로 동물을 사육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1. 소유자등이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요양을 하는 경우

2. 소유자등이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하는 경우

3. 태풍, 수해, 지진 등으로 소유자등의 주택 또는 보호시설이 파손 또는 유실되어 동물에 대한 보호가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동물보호센터 등 보호시설의 수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동물을 인수하기 곤란하다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물의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제29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질병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동물이 질병 또는 상해로부터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2. 동물이 사람이나 보호조치 중인 다른 동물에게 질병을 옮기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매우 높은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3. 법 제45조에 따른 기증 또는 분양이 곤란한 경우 등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체관리카드에 인도적처리 약제 사용기록을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약제 사용기록은 「수의사법」 제13조에 따른 진

료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본을 개체관리카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0조(전임수의사의 교육) ① 영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을 말한다.

1. 동물보호 관련 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실험동물의 보호·복지에 관한 사항
3. 실험동물의 사육·관리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실시 및 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1조(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 금지의 적용 제외) 법 제50조 단서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영재교육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영재학교(이하 이 조에서 “학교”라 한다)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학교가 동물 해부실습의 시행에 대해 법 제52조에 따른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학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동물 해부실습을 시행하는 경우
- 가. 동물 해부실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동물 해

부실습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것

나.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의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것

- 1) 과학 관련 교원
- 2) 시·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그 밖의 교육과정 전문가
- 3) 학교의 소재지가 속한 시·도에 거주하는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또는 「의료법」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

4) 학교의 학부모

다. 학교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물 해부실습의 시행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것

라.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운영에 관하여 별표 9의 기준을 준수할 것

3. 동물실험시행기관이 동물 해부실습의 시행에 대해 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나. 법 제51조제2항제2호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로 보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실험동물운영위원회

다. 법 제52조에 따른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

제32조(윤리위원회) ① 법 제51조제2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하의 동물실험시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연구인력 5명 이하인 경우
2. 동물실험계획의 심의 건수 및 관련 연구 실적 등에 비추어 윤리위원회를 따로 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② 법 제51조제4항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동물실험 연구책임자의 변경
2. 실험동물 종의 추가나 변경
3. 승인받은 실험동물 사용 마릿수의 50% 이상 증가
4. 별표 10에 따른 고통등급의 변경(D 또는 E등급으로 상향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윤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51조제4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란 제2항 각 호를 제외한 실험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33조(윤리위원회 위원 자격) ① 법 제53조제2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동물실험 또는 실험

동물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수의사

2. 법 제48조에 따른 전임수의사
3. 제2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수의사
4.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른 대한수의사회에서 인정하는 실험동물 전문수의사

② 법 제53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영 제6조 각 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서 동물보호나 동물복지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영 제6조 각 호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동물보호·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사람
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검역본부장이 실시하는 동물보호·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사람

③ 법 제53조제2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동물실험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동물실험 또는

실험동물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학위를 취득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철학·법학 또는 동물보호·동물복지를 담당하는 교수

3. 그 밖에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제2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④ 제2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동물보호·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4조(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에 법 제5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천을 의뢰받은 민간단체는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1명 이상을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추천할 수 있다.

③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 적임자를 선택하여 법 제5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과 함께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④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윤리위원회가 구성되거나 구성된 윤리위원회에 변경이 있는 경우 윤리위원회의 구성 또는 변

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검역본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윤리위원회 위원의 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1. 최근 3년 이내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

2.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임직원 및 그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

3.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 총 주식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사람 또는 법인의 임직원

4.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실험동물이나 관련 기자재를 공급하는 등 사업상 거래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법인의 임직원

5.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의 계열회사 또는 같은 법인에 소속된 임직원

제36조(운영 실적)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영 제21조제7항에 따라 윤리위원회 운영 및 동물실험의 실태에 관한 사항을 검역본부장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실적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제37조(윤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교육) ① 검역본부장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윤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교육업무를 수행한다.

②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2. 영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③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매년 6시간 이상 받아야 하며, 해당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물보호 정책 및 동물실험 윤리 제도
2. 동물 보호·동물복지 이론 및 국제동향
3.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 및 과학적 이용
4. 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5. 그 밖에 검역본부 또는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검역본부 또는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 제3항에 따른 교육을 시행하는 경우 인터넷전용망을 이용한 사이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8조(영업의 허가) ① 법 제69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
2. 인력 현황
3. 사업계획서
4. 별표 11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동물사체에 대한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또는 동물수분해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법 제74조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의 서류 외에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이 별표 11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신청

인에게 별지 제20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1호서식의 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 관리대장을 각각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허가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허가영업의 세부범위)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허가영업의 세부범위는 아래와 같다.

1. 동물생산업 :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영업
2. 동물수입업 : 반려동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3. 동물판매업 : 반려동물을 구입하여 판매거나, 판매를 알선 또는 중개하는 영업

4. 동물장묘업 :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영업

가.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 동물 사체의 보관, 안치, 염습 등을 하거나 장례의식을 하는 시설

나. 동물화장시설 :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우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다. 동물건조장시설 :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건조·멸균분쇄의 방

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라. 동물수분해장시설 : 동물의 사체를 화학용액을 사용해 녹이고 유골만 수습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마. 동물 전용의 봉안시설 : 동물의 유골 등을 안치·보관하는 시설
제40조(허가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별표 11와 같다.

제41조(허가사항의 변경 등) ① 법 제69조제4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허가증

2. 제38조제1항 각 호에 대한 변경내역서(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69조제4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

2. 영업장 전화번호

3. 기재사항의 계산착오, 오기,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③ 법 제69조제4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변경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2조(공설동물장묘시설의 특례 등)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동물을 위한 장묘시설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별표 11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기준을 준용한다.

제43조(영업의 등록) ① 법 제73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영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력 현황
2.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
3. 사업계획서
4. 별표 12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 및 자동차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자동차를 이용한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자동차등록증(자동차를 이용한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법 제74조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제1항의 서류 외에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별표 12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5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6호서식의 영업등록(변경등록, 변경신고) 관리대장을 각각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영업자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등록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44조(등록영업의 세부범위)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등록영업의 세부범위는 아래와 같다.

1. 동물전시업 : 반려동물을 보여주거나 접촉하게 할 목적으로 영업자 소유의 동물을 5마리 이상 전시하는 영업. 다만,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원은 제외한다.

2. 동물위탁관리업 :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반려동물을 영업
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육, 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

3. 동물미용업 : 반려동물의 털, 피부 또는 발톱 등을 손질하거나 위생
적으로 관리하는 영업

4. 동물운송업 : 반려동물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송하는 영업

제45조(등록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제46조(등록영업의 변경 등) ① 법 제73조제4항 본문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
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
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등록증

2. 제42조제1항 각 호에 대한 변경내역서(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
다)

② 법 제73조제4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

2. 영업장 전화번호

3. 기재사항의 계산착오, 오기,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③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영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첨
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
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주민등록표 초본 및 자
동차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
출하도록 해야 한다.

1.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자동차를 이용한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자동차등록증(자동차를 이용한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의 경우
에만 해당한다)

제47조(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① 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
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
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 또는 허가를 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양도·양수의 경우

가.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양도인이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2.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양도의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

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인이 법 제74조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가 제41조제2항제1호 또는 제4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신고할 수 있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20호서식의 허가증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48조(휴업 등의 신고) ①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휴업(재개업·폐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허가증(등록증) 원본(폐업 신고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휴업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어 재개업할 때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 신고를 받아 이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영업자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동물처리계획서는 별지 제32호서식과 같다.

제49조(직권말소)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 허가 또는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임대차계약의 종료여부
2. 영업장의 사육시설·설비 등의 철거여부
3. 관할세무서에의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 여부
4. 영업장 내 동물의 보유여부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허가 또는 등록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영

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제50조(영업자등의 준수사항) 영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와 그 종사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3과 같다.

제51조(거래내역의 신고) ①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취급한 등록대상동물의 거래내역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33호 서식으로 신고(동물정보시스템을 통한 방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거래내역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정보시스템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제52조(표준계약서의 보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개발된 표준계약서를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3조(영업자 교육) ① 법 제8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의 종류, 교육 시기 및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업 신청 전 교육: 영업허가 신청일 또는 등록신청일 이전 1년 이내 3시간
2. 영업자 정기교육: 영업 허가 또는 등록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매년 3시간

3. 영업정지처분에 따른 추가교육: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3시간

② 법 제82조에 따른 영업자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물보호 관련 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동물의 보호·복지에 관한 사항

3. 동물의 사육·관리 및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

4. 영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기관(제17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교육대상 영업자가 2개 이상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의 등록을 한 자인 경우 제2항 각 호의 교육내용 중 중복된 사항에 대한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④ 교육기관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교육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기록을 동물정보시스템을 통해 유지·관리하고, 교육이 끝난 날부터 2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54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83조에 따른 영업자에 대한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4과 같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행정처분 및 청문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55조(영업장의 폐쇄)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5조제2항제2호·제3호에 따른 게시물의 부착이나 봉인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떼어내거나 봉인의 해제할 수 있다.

1. 게시물의 부착이나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영업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그 사업장을 폐쇄할 것을 약속한 경우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를 들어 게시물을 떼어내거나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는 그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56조(시정명령) 법 제86조제1항제3호에서 “동물에 대한 위해 방지 조치의 이행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정명령”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을 말한다.

1.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중지
2. 동물에 대한 위해 방지 조치의 이행
3. 공중위생 및 사람의 신체·생명·재산에 대한 위해 방지 조치의 이행
4.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동물에 대한 신속한 치료

제57조(동물보호관의 증표) 법 제88조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관의 증표는 별지 제35호서식과 같다.

제58조(등록 등의 수수료) 법 제91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5과 같다.
이 경우 수수료는 정부수입인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현금, 계좌이체,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제59조(규제의 재검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삭제
2. 제5조에 따른 동물운송자의 범위: 2017년 1월 1일
3. 제6조에 따른 동물의 도살방법: 2017년 1월 1일

4. 삭제

5. 제8조 및 별표 2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사항 및 방법 등: 2017년 1월 1일

6. 제9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대상 및 절차 등: 2017년 1월 1일

7. 제19조 및 별표 5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 2017년 1월 1일

8. 제24조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공동 설치 등: 2017년 1월 1일

9. 제26조에 따른 윤리위원회 위원 자격: 2017년 1월 1일

10. 제25조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실적 통보서의 기재사항: 2017년 1월 1일

11. 제27조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구성 절차: 2017년 1월 1일

12. 제35조 및 별표 9에 따른 영업의 범위 및 시설기준: 2017년 1월 1일

13. 제38조에 따른 등록영업의 변경신고 대상 및 절차: 2017년 1월 1일

14. 제41조에 따른 허가사항의 변경신고 대상 및 변경 등의 신고 절차: 2017년 1월 1일

15. 제43조 및 별표 10에 따른 영업자의 준수: 2017년 1월 1일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동물등록제 제외 지역의 기준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동물의 적절한 사육·관리 방법 등(제5조 관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를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로 하고, 제13조제1호사목 중 “「동물보호법」 제12조”를 “「동물보호법」 제15조”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1. 일반기준

- 가. 동물의 소유자등은 최대한 동물 본래의 습성에 가깝게 사육·관리하고,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며, 동물의 복지를 증진해야 한다.
- 나. 동물의 소유자등은 동물이 갈증·배고픔, 영양불량, 불편함, 통증·부상·질병, 두려움과 정상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동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다. 동물의 소유자등은 동물의 사육환경을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 1) 동물의 종류, 크기, 특성, 건강상태, 사육목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적절한 사육환경을 제공할 것
 - 2) 동물의 사육공간 및 사육시설은 동물이 자연스러운 자세로 일어나거나 눕고 움직이는 등의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크기일 것

2. 개별기준

- 가. 동물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동물에 대해서는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기 위해 낮 시간 동안 축사 내부의 조명도를 다음의 기준에 맞게 유지해야 한다.
 - 1) 돼지의 경우: 바닥의 평균조명도가 최소 40럭스(lux) 이상이 되도록 하되, 8시간 이상 연속된 명기(明期)를 제공할 것
 - 2) 육계의 경우: 바닥의 평균조명도가 최소 20럭스(lux) 이상이 되도록 하되, 6시간 이상 연속된 암기(暗期)를 제공할 것
- 나. 소, 돼지, 산란계 또는 육계를 사육하는 축사 내 암모니아 농도는 25피피엠(ppm)을 넘어서는 안 된다.
- 다. 깔짚을 이용하여 육계를 사육하는 경우에는 깔짚을 주기적으로 교체하여 건조하게 관리해야 한다.
- 라. 개는 분기마다 1회 이상 구충(驅蟲)을 하되, 구충제의 효능 지속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구충제의 효능 지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주기적으로 구충을 해야 한다.
- 마. 돼지의 송곳니 발치·절치 및 거세는 생후 7일 이내에 수행해야 한다.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관리 의무(제6조제4항 관련)

1. **동물의 사육공간**(동물이 먹이를 먹거나,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곳으로서 벽, 칸막이, 그 밖에 해당 동물의 습성에 맞는 설비로 구획된 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는 것
 - 가. 사육공간의 위치는 차량, 구조물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없는 곳에 마련할 것
 - 나. 사육공간의 바닥은 땅 등 동물의 발이 빠질 수 있는 재질로 하지 않을 것
 - 다. 사육공간은 동물이 자연스러운 자세로 일어나거나 눕거나 움직이는 등의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제공하되, 다음의 요건을 갖추는 것
 - 1) 가로 및 세로는 각각 사육하는 동물의 몸길이(동물의 코부터 꼬리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2.5배 및 2배 이상일 것. 이 경우 하나의 사육공간에서 사육하는 동물이 2마리 이상일 경우에는 마리당 해당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2) 높이는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 이상일 것
 - 라. 동물을 실외에서 사육하는 경우 사육공간 내에 더위, 추위, 눈, 비 및 직사광선 등을 피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할 것
 - 마. 동물을 줄로 묶어서 사육하는 경우 그 줄의 길이는 2m 이상으로 하되, 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동물의 사육공간을 제한하지 않을 것. 다만, 해당 동물의 안전이나 사람 또는 다른 동물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동물의 사육공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 바. 동물의 습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 사육하지 않을 것
2. **동물의 위생·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할 것**
 - 가. 동물에게 질병(골절 등 상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수의학적 처치를 제공할 것
 - 나. 2마리 이상의 동물을 함께 사육하는 경우에는 동물의 사체나 전염병이 발생한 동물은 즉시 다른 동물과 격리할 것
 - 다. 동물을 줄로 묶어서 사육하는 경우 동물이 그 줄에 묶이거나 목이 조이는 등으로 인해 고통이나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
 - 라. 동물의 영양이 부족하지 않도록 사료 등 동물에게 적합한 먹이와 깨끗한 물을 공급할 것
 - 마. 먹이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 및 휴식공간은 분변, 오물 등을 수시로 제거하고 청결하게 관리할 것
 - 바. 동물의 행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털과 발톱을 적절하게 관리할 것
 - 사. 동물의 사육공간이 소유자등이 거주하는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의 위생·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할 것

인식표의 재질 및 규격 등(제12조제2항 관련)

1. 인식표의 재질 및 규격

- 가. 인식표는 동물 및 외부 충격 등에 의하여 그 형태 및 표시사항이 쉽게 훼손되지 않는 재질로 제작되어야 한다.
- 나. 인식표의 표시사항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여야 하며, 그 형태 및 표시사항이 쉽게 훼손되지 않는 방식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 다. 「동물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맹견에게 부착하는 인식표(이하 “맹견인식표”라 한다)는 사각형인 경우 가로 4센티미터 이상, 세로 4센티미터 이상의 크기, 원형인 경우 짧은 쪽의 지름이 6센티미터 이상의 크기여야 한다. 그 외의 모양인 경우 해당 도형의 가장 작은 너비가 4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라. 맹견인식표의 색상은 주황색 바탕에 검은색 문자로 하고, 국가기술표준원의 한국색표준분류기준 및 CIE L*a*b* 표색계에 따른다. 다만, CIE L*a*b* 표색계의 허용오차는 $\Delta E^*ab \leq 3$ 으로 한다.

색상명칭	색번호표	색상명칭	색번호표
주황색	L* = 57.18	검은색	L* = 25.70
	a* = 35.06		a* = 0.10
	b* = 41.13		b* = -5.48

2. 인식표의 부착 방법

- 가. 인식표는 동물 및 외부 충격 등에 의하여 잘 떨어지지 않는 방식으로 동물에게 부착하여야 한다.
- 나. 인식표는 등록대상동물이 착용한 목줄의 목걸이 부분에 부착한다. 다만, 가슴줄을 착용한 경우에는 가슴줄(하네스)에 부착하되 외출하는 동안 인식표가 동물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다.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른 위치에 부착할 수 있다.
- 비고.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등에게 인식표를 제공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하여 GPS를 이용한 위치추적, QR코드 등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의 편의를 위한 기능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인식표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소유자등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보험금액(제13조 관련)

1. 상해등급에 따른 보험금액

등급	보험금액	상해 내용
1급	1,500만원	1. 엉덩관절 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 2. 척추체 분쇄성 골절 3. 척추체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각종 신경증상으로 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4. 외상성 두개강(頭蓋腔) 내 출혈로 개두수술(開頭手術)이 불가피한 상해 5. 두개골의 함몰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6. 심한 뇌 타박상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해(48시간 이상 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7. 넓적다리뼈 중간부분의 분쇄성 골절 8. 정강이뼈 아래 3분의 1에 해당하는 분쇄성 골절 9. 3도 화상 등 연조직(soft tissue) 손상이 신체 표면의 9퍼센트 이상인 상해 10. 팔다리와 몸체에 연조직 손상이 심하여 유경(有莖)피부이식술(pedicled skin graft: 피부·피하조직을 전면에 걸쳐 잘라내지 않고 일부를 남기고 이식하는 방법을 말한다)이 불가피한 상해 11.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2급	800만원	1. 위팔뼈 중간부분 분쇄성 골절 2. 척추체의 설상압박골절(wedge compression fracture: 전방굴곡에 의한 척추 앞부분의 손상으로 신경증상이 없는 안정성 골절을 말한다)이 있으나 각종 신경증상이 없는 상해 3.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현저한 상해 4. 흉복부장기파열과 골반 골절이 동반된 상해 5. 무릎관절 탈구 6. 발목관절부 골절과 골절성 탈구가 동반된 상해 7. 자뼈(아래팔 뼈 중 안쪽에 있는 뼈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간부분 골절과 노뼈(아래팔 뼈 중 바깥쪽에 있는 뼈를 말한다. 이하 같다) 뼈머리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천장골 간 관절 탈구 9.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3급	750만원	1. 위팔뼈 윗목부분 골절

		2. 위팔뼈 복사부분[踝部] 골절과 팔꿈관절 탈구가 동반된 상해 3. 노뼈와 자뼈의 중간부분 골절이 동반된 상해 4. 손목손배뼈[水根舟狀骨] 골절 5. 노뼈 신경손상을 동반한 위팔뼈 중간부분 골절 6. 넓적다리뼈 중간부분 골절 7. 무릎뼈의 분쇄골절과 탈구로 인하여 무릎뼈 완전적출술이 적용되는 상해 8. 정강이뼈 복사부분 골절이 관절 부분을 침범하는 상해 9. 발목뼈·발허리뼈 간 관절 탈구와 골절이 동반된 상해 10. 전후십자인대나 내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과 정강이뼈 가시 골절 등이 복합된 슬내장(膝內障: 무릎관절을 구성하는 뼈, 반월판, 인대 등의 손상과 장애를 말한다) 11. 복부내장파열로 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12. 뇌손상으로 뇌신경마비를 동반한 상해 13. 중한 뇌 타박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14.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4급	700만원	1. 넓적다리뼈 복사부분 골절 2. 정강이뼈 중간부분 골절 3. 목말뼈[距骨] 윗목부분 골절 4. 슬개인대(무릎뼈와 정강이뼈를 연결하는 인대를 말한다) 파열 5. 어깨 관절부의 회전 근개 파열 6. 위팔뼈외측상과 전위골절 7. 팔꿈관절부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3도 화상 등 연조직 손상이 신체 표면의 4.5퍼센트 이상인 상해 9. 안구 파열로 적출술이 불가피한 상해 10.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5급	500만원	1. 골반뼈의 중복골절(말가이그니씨 골절 등) 2. 발목관절부의 내외과골절이 동반된 상해 3. 무릎관절부의 내측 또는 외측부 인대 파열 4. 발꿈치뼈[足終骨] 골절 5. 위팔뼈 중간부분 골절 6. 노뼈 먼쪽 부위[遠位部] 골절 7. 자뼈 몸쪽 부위[近位部] 골절 8. 다발성 늑골 골절로 혈흉 또는 기흉이 동반된 상해 9. 발등부 근건 파열창

		10. 손바닥부 근건 파열창 11. 아킬레스건 파열 12. 2도 화상 등 연조직 손상이 신체 표면의 9퍼센트 이상인 상해 13. 23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14.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6급	400만원	1. 소아의 다리 긴뼈의 중간부분 골절 2. 넓적다리뼈 대전자부절편 골절 3. 넓적다리뼈 소전자부절편 골절 4. 다발성 발허리뼈[中足骨] 골절 5. 치골·좌골·긴뼈의 단일골절 6. 단순 무릎뼈 골절 7. 노뼈 중간부분 골절(원위부 골절은 제외한다) 8. 자뼈 중간부분 골절(근위부 골절은 제외한다) 9. 자뼈 팔꿈치머리 골절 10. 다발성 손허리뼈 골절 11.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상해 12.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13. 뇌 타박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14. 19개 이상 22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15.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7급	250만원	1. 소아의 팔 긴뼈 중간부분 골절 2. 발목관절 안복사뼈[內踝骨] 또는 바깥복사뼈[外踝骨] 골절 3. 위팔뼈 골절 윗복사부분 굴곡골절 4. 엉덩관절 탈구 5. 어깨관절 탈구 6. 어깨봉우리·쇄골 간 관절 탈구 7. 발목관절 탈구 8. 2도 화상 등 연조직 손상이 신체 표면의 4.5퍼센트 이상인 상해 9. 16개 이상 18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10.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8급	180만원	1. 위팔뼈 윗복사부분 신전(伸展)골절 2. 쇄골 골절 3. 팔꿈관절 탈구 4. 어깨뼈 골절 5. 팔꿈관절 내 위팔뼈 작은 머리 골절

		6. 코뼈 중간부분 골절 7. 발가락뼈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다발성 늑골 골절 9. 뇌 타박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상해 10. 위턱뼈 골절 또는 아래턱뼈 골절 11. 13개 이상 15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12.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9급	140만원	1. 척추골의 극상돌기(棘狀突起) 또는 횡돌기(橫突起) 골절 2. 노뼈 골두골 골절 3. 손목관절 내 월상골 전방탈구 등 손목뼈 탈구 4. 손가락뼈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5. 손허리뼈 골절 6. 손목뼈 골절(손배뼈는 제외한다) 7. 발목뼈 골절(목말뼈 및 발꿈치뼈는 제외한다) 8. 발허리뼈 골절 9. 발목관절부 염좌 10. 늑골 골절 11. 척추체 간 관절부 염좌와 인대, 근육 등 주위의 연조직 손상이 동반된 상해 12. 손목관절 탈구 13. 11개 이상 12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14.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0급	120만원	1. 외상성 무릎관절 내 혈종 2. 손허리뼈 지골 간 관절 탈구 3. 손목뼈·손허리뼈 간 관절 탈구 4. 손목관절부 염좌 5. 모든 불완전골절(코뼈, 손가락뼈 및 발가락뼈 골절은 제외한다) 6. 9개 이상 10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7.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1급	100만원	1. 발가락뼈 관절 탈구 및 염좌 2. 손가락 관절 탈구 및 염좌 3. 코뼈 골절 4. 손가락뼈 골절 5. 발가락뼈 골절 6. 뇌진탕

		7. 고막 파열 8. 6개 이상 8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9.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2급	60만원	1. 8일 이상 14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상해 2. 15일 이상 26일 이하의 통원이 필요한 상해 3. 4개 이상 5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13급	40만원	1. 4일 이상 7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상해 2. 8일 이상 14일 이하의 통원이 필요한 상해 3. 2개 이상 3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14급	20만원	1. 3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상태 2. 7일 이하의 통원이 필요한 상해 3. 1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비고

1. 위 표에서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질병명 중 개방성 골절(뼈가 피부 밖으로 튀어나온 골절을 말한다)은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높게 보상한다.
2. 위 표에서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질병명 중 단순성 선 모양 골절(線狀骨折)로 뼈조각의 위치 변화가 없는 골절의 경우에는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낮게 보상한다.
3. 위 표에서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질병명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부터 하위 3등급(예: 2급이 주종일 때에는 5급까지의 사이)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한 등급 높게 보상한다.
4. 일반 외상과 치아보철이 필요한 상해가 중복되었을 때에는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 상해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산액을 보상한다.

2. 후유장애등급에 따른 보험금액

등급	보험금액	신체장애
1급	8,000만원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반신마비가 된 사람 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2급	7,200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3급	6,400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4급	5,60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전부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발목발허리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급	4,800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6급	4,00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대부분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4.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 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 쓰게 된 사람 8. 한쪽 손의 5개 손가락을 잃거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급	3,200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5개 손가락을 잃거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8. 한쪽 발을 발목발허리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한쪽 팔에 가관절(假關節, 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못하여 그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0.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못 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13. 양쪽의 고환 또는 난소를 잃은 사람
8급	2,400만원	1.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8.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9급	1,80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2.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0급	1,500만원	1. 한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 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는 데에 지장이 있는 사람 6.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8.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 발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급	1,200만원	1. 두 눈이 모두 근접 반사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 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8.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9.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0. 10개 이상 13개 이하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 보철을 한 사람 11.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12급	1,000만원	1. 한쪽 눈의 근접반사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 9개 이하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5. 쇄골·흉골·늑골·어깨뼈 또는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8. 다리의 긴뼈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0.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2. 신체 일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13급	800만원	1.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 일부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이상 6개 이하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 보철을 한 사람 5.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4급	500만원	1. 한쪽 눈의 눈꺼풀 일부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 이상 4개 이하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 보철을 한 사람 3. 팔이 보이는 부분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4. 다리가 보이는 부분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8.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9.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0.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비고

1. 신체장애가 둘 이상 있을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보다 한 등급 높게 보상한다.
2.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로 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3.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은 손가락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제1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4.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 말단의 2분의 1 이상을 잃거나 손허리 손가락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은 손가락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6.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은 끝관절의 2분의 1 이상, 그 밖의 발가락은 끝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발허리발가락관절[中足趾關節] 또는 제1지관절(엄지발가락은 발가락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7.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했어도 맨눈으로 알아볼 수 있는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8.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은 가능하나 그 외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10. 향상보호 또는 수시보호의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력 상실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한다.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5]

동물보호센터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16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보호실, 격리실, 사료보관실 및 진료실을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동물 구조 및 운반용 차량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정보호센터 운영자가 동물에 대한 진료를 동물병원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진료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지정보호센터 운영자가 구조업무를 지정받지 않은 경우에는 구조 및 운반용 차량을 보유하지 않을 수 있다.
- 나. 동물의 탈출 및 도난방지, 방역 등을 위하여 방법시설 및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시설의 외부와 경계를 이루는 담장이나 울타리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단독건물 등 시설 자체로 외부인과 동물의 출입통제가 가능한 경우는 담장이나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다. 시설의 청결유지와 위생관리에 필요한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바닥은 청소와 소독이 용이한 재질이어야 한다. 다만, 운동장은 제외한다.
- 라. 보호동물을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동물의 수용시설과 독립된 별도의 처리공간이 있어야 한다. 다만, 동물보호센터 내 독립된 진료실을 갖춘 경우 그 시설로 대체할 수 있다.
- 마. 동물 사체를 보관할 수 있는 잠금장치가 설치된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바. 동물보호센터장은 구조, 치료, 보호, 반환 또는 입양 등 동물보호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 여건에 맞게 동물보호센터장을 포함하여 보호동물 20마리당 1명 이상의 보호·관리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개별기준

- 가. 보호실은 다음의 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동물을 위생적으로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온도 및 습도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 2) 채광과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3) 보호실이 외부에 노출된 경우, 직사광선, 비바람 등을 피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나. 격리실은 다음의 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 2) 외부환경에 노출되어서는 아니 되고, 온도 및 습도 조절이 가능하며, 채광과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 3) 전염성 질병에 걸린 동물은 질병이 다른 동물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별도로 구획되어야 하며, 출입시 소독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4) 격리실에 보호중인 동물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상태를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다만, 해당 동물의 생체, 보호여건 등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사료보관실은 청결하게 유지하고 해충이나 쥐 등이 침입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그 밖의 관리물품을 보관하는 경우 서로 분리하여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 라. 진료실은 진료대, 소독장비 등 동물의 진료에 필요한 기구·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진료대 및 진료기구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마. 보호실, 격리실 및 진료실 내에서 개별 동물을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는 장치는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장치는 동물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크기로서, 가로 및 세로의 길이가 동물의 몸길이(코부터 꼬리 기시부까지의 길이)의 각각 2배 이상 되는 곳에 수용하도록 한다. 다만, 개와 고양이의 경우 권장하는 최소 크기는 아래와 같다.
 - 가) 소형견(5kg 미만): 50 × 70 × 60(cm)
 - 나) 중형견(5kg 이상 15kg 미만): 70 × 100 × 80(cm)
 - 다) 대형견(15kg 이상): 100 × 150 × 100(cm)
 - 라) 고양이: 50 × 70 × 60(cm)
 - 2) 평평한 바닥을 원칙으로 하되, 철망 등으로 된 경우 철망의 간격이 동물의 발이 빠지지 않는 규격이어야 한다.
 - 3) 장치의 재질은 청소, 소독 및 건조가 쉽고 부식성이 없으며 쉽게 부서지거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장치를 2단 이상 쌓은 경우 충격에 의해 무너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4) 분뇨 등 배설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매일 1회 이상 청소하여 동물이 위생적으로 관리될 수 있어야 한다.
 - 5) 동물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장치 외부에 표지판이 부착되어야 한다.
- 바. 동물구조 및 운송용 차량은 동물을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개별 수용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화물자동차인 경우 직사광선, 비바람 등을 피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6]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제20조 관련)

1. 일반사항

- 가. 동물보호센터에 입소되는 모든 동물은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나. 동물은 종류별, 성별(어리거나 중성화된 동물은 제외한다) 및 크기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질환이 있는 동물(상해를 입은 동물을 포함한다), 공격성이 있는 동물, 나이가 든 동물, 어린 동물(어미와 함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새끼를 배거나 젖을 먹고 있는 동물은 분리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 다. 축종, 품종, 나이, 체중에 맞는 사료 등 먹이를 적절히 공급하고 항상 깨끗한 물을 공급하며, 그 용기는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 라. 소독약과 소독장비를 가지고 정기적으로 소독 및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 마. 보호센터는 방문목적이 합당한 경우, 누구에게나 개방하여야 하며, 방문시 방문자 성명, 방문일시, 방문목적, 연락처 등을 기록하여 작성일로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 중인 동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개방시간을 정하는 등의 제한을 둘 수 있다.
- 바. 보호 중인 동물은 진료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시설 내에서 보호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개별사항

- 가. 동물의 구조 및 포획은 구조자와 해당 동물 양측에게 안전한 방법으로 실시하며, 구조 직후 동물의 상태를 확인하여 건강하지 아니한 개체는 추가로 응급조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나. 보호동물 입소 시 개체별로 별지 제13호서식의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처리결과 및 그 관련 서류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 다. 보호동물의 등록을 확인하고, 보호동물이 등록된 동물인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 중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라. 보호동물의 반환 시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기록 또는 해당 보호동물의 반응 등을 참고하여 반환해야 하고, 보호동물을 다시 분실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해당 보호동물이 동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

우에는 동물등록을 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마. 보호동물의 분양 시 번식 등의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성화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 분양하고, 민법 제4조에 따른 미성년자(친권자 및 후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처벌받은 자에게 분양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보호동물이 다시 유기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해당 보호동물이 동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동물등록을 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바. 제29조에 해당하는 동물을 인도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동물보호센터 종사자 1명 이상의 참관하에 수의사가 시행하도록 하며, 마취제 사용 후 심장에 직접 작용하는 약물 등을 사용하는 등 인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사. 동물보호센터 내에서 발생한 동물의 사체는 별도의 냉동장치에 보관 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거나 법 제6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 및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설동물장묘시설을 통해 처리한다. 다만, 바목에 따른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의료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한다.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7]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시설기준(제23조제4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보호실, 격리실 및 사료보관실을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진료실을 보유하고 있다면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나. 동물의 탈출 및 도난방지, 방역 등을 위하여 방법시설 및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시설의 외부와 경계를 이루는 담장이나 울타리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단독건물 등 시설 자체로 외부인과 동물의 출입통제가 가능한 경우는 담장이나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 시설의 청결유지와 위생관리에 필요한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바닥은 청소와 소독이 용이한 재질이어야 한다. 다만, 운동장은 제외한다.

라. 동물 사체를 보관할 수 있는 잠금장치가 설치된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개별기준

가. 보호실은 다음의 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동물을 위생적으로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온도 및 습도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 2) 채광과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3) 보호실이 외부에 노출된 경우, 직사광선, 비바람 등을 피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격리실은 다음의 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 2) 외부환경에 노출되어서는 아니 되고, 온도 및 습도 조절이 가능하며, 채광과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 3) 전염성 질병에 걸린 동물은 질병이 다른 동물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별도로 구획되어야 하며, 출입시 소독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4) 격리실에 보호중인 동물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상태를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다만, 해당 동물의 생체, 보호여건 등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사료보관실은 청결하게 유지하고 해충이나 쥐 등이 침입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그 밖의 관리물품을 보관하는 경우 서로 분리하여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진료실이 있는 경우는, 진료실은 진료대, 소독장비 등 동물의 진료에 필요한 기구·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진료대 및 진료기구 등을 위생적

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마. 보호실, 격리실 및 진료실 내에서 개별 동물을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는 장치는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장치는 동물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크기로서, 가로 및 세로의 길이가 동물의 몸길이(코부터 꼬리 기시부까지의 길이)의 각각 2배 이상 되는 곳에 수용하도록 한다. 다만, 개와 고양이의 경우 권장하는 최소 크기는 아래와 같다.

가) 소형견(5kg 미만): 50 × 70 × 60(cm)

나) 중형견(5kg 이상 15kg 미만): 70 × 100 × 80(cm)

다) 대형견(15kg 이상): 100 × 150 × 100(cm)

라) 고양이: 50 × 70 × 60(cm)

2) 평평한 바닥을 원칙으로 하되, 철망 등으로 된 경우 철망의 간격이 동물의 발이 빠지지 않는 규격이어야 한다.

3) 장치의 재질은 청소, 소독 및 건조가 쉽고 부식성이 없으며 쉽게 부서지거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장치를 2단 이상 쌓은 경우 충격에 의해 무너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분뇨 등 배설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매일 1회 이상 청소하여 동물이 위생적으로 관리될 수 있어야 한다.

5) 동물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장치 외부에 표지판이 부착되어야 한다.

바. 동물 운송용 차량이 있는 경우 동물을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개별 수용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화물자동차인 경우 직사광선, 비바람 등을 피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8]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운영기준(제23조제4항 관련)

1. 일반사항

가. 민간동물보호시설에 입소되는 모든 동물은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나. 동물은 종류별, 성별(어리거나 중성화된 동물은 제외한다) 및 크기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질환이 있는 동물(상해를 입은 동물을 포함한다), 공격성이 있는 동물, 나이든 동물, 어린 동물(어미와 함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새끼를 배거나 젖을 먹고 있는 동물은 분리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다. 축종, 품종, 나이, 체중에 맞는 사료 등 먹이를 적절히 공급하고 항상 깨끗한 물을 공급하며, 그 용기는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라. 소독약과 소독장비를 가지고 정기적으로 소독 및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마.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운영자는 보호중인 동물의 분양을 위해 노력해야하며, 자원봉사자 등 외부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외부인 방문 시 방문자 성명, 방문일시, 방문목적, 연락처 등을 기록하여 작성일로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 중인 동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개방시간을 정하는 등의 제한을 둘 수 있다.

바. 보호 중인 동물은 진료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시설 내에서 보호함을 원칙으로 하고 보호동물의 복지와 상업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중성화수술을 권장한다.

사.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운영자는 보호, 치료, 입양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호동물 50마리당 1명 이상의 보호·관리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아. 여러 동물을 함께 수용할 때에는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동물의 건강상태, 나이, 성별, 동물종, 기질 등을 고려하여 분리 또는 합사하여야 한다.

2) 함께 수용하더라도 동물이 개별적으로 쉴 수 있는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3) 물과 사료 경쟁이 생기지 않도록 그릇의 형태 및 개수를 적절히 배치하여야 한다.

2. 개별사항

가. 동물을 인수 또는 기증받은 경우 등록대상동물은 동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개체별로 별지 제13호서식의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처리결과 및 그 관련서류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만일 등록대상동물이 동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동물등록을 해야한다.

나. 보호동물의 분양 시 번식 등의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성화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 분양하고, 민법 제4조에 따른 미성년자(친권자 및 후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처벌받은 자에게 분양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보호동물이 다시 유기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해당 보호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인 경우 동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동물등록을 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다. 민간동물보호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체는 별도의 냉동장치에 보관 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거나 법 제6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 및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설동물장묘시설을 통해 처리한다.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9]

동물 해부실습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운영 기준(제31조제2호라목 관련)

1. 심의위원회는 동물 해부실습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가. 동물 해부실습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었는지 여부
- 나. 동물 해부실습이 학생들에게 미칠 수 있는 정서적 충격을 고려하였는지 여부
- 다. 동물 해부실습을 원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별도의 지도방법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 라. 지도 교원이 동물 해부실습에 대한 과학적 지식과 경험을 갖추었는지 여부
- 마. 동물을 최소한으로만 사용하는지 여부
- 바. 동물의 고통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실습의 경우 실습 과정에서 동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절한 수의학적인 방법 또는 조치가 계획되어 있는지 여부

2.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해야 하며,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장비·장소 및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4. 심의위원회는 제1호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5. 동물 해부실습의 시행에 관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동물 해부실습과 지도 교원, 동물 해부실습 방식, 사용 동물의 종(種) 및 마릿수가 모두 같은 동물 해부실습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부터 2년간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 개최일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학생, 학부모 등의 재심의 요청이 있거나 학교의 장이 재심의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재심의를 해야 한다.

6.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심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작성해야 한다.

7. 동물 해부실습 지도 교원은 해부실습이 종료한 후 해당 해부실습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8. 간사는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일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동물실험의 고통등급(제32조제2항제5호 관련)

등급	분류기준
A	세균, 원충 및 무척추동물을 사용한 실험, 연구, 수술 또는 실험
B	척추동물을 사용, 고통·스트레스가 없이 사육, 적응, 유지하는 실험
C	척추동물을 사용, 고통·스트레스가 거의 없어 마취제나 진통제를 사용하지 않는 실험
D	척추동물을 사용, 고통·스트레스가 있어 적절한 마취제나 진통제 등을 사용하는 실험
E	척추동물을 사용, 고통·스트레스가 있고 마취제나 진통제등을 사용하지 않는 실험

허가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38조제1항제4호 관련)

1. 공통 기준

가.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분리(벽이나 층 등으로 나누어진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분리하지 않을 수 있다.

- 1) 영업장(동물장묘업은 제외한다)과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이하 “동물병원”이라 한다)의 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 2) 영업장과 금붕어, 앵무새, 이구아나 및 거북이 등을 판매하는 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 3) 제2호가목1)바)에 따라 개 또는 고양이를 소규모로 생산하는 경우

나. 영업 시설은 동물의 습성 및 특징에 따라 채광 및 환기가 잘 되어야 하고, 동물을 위생적으로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온도와 습도 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다. 청결 유지와 위생 관리에 필요한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바닥은 청소와 소독을 쉽게 할 수 있고 동물들이 다칠 우려가 없는 재질이어야 한다.

라. 설치류나 해충 등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해야 하고, 소독약과 소독장비를 갖추고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마. 영업장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해야 한다.

2. 개별 기준

가. 동물생산업

1) 일반기준

가) 사육실, 분만실 및 격리실을 분리 또는 구획(칸막이나 커튼 등으로 나누어진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설치해야 하며, 동물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실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바)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사육실, 분만실 및 격리실에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사육설비의 바닥은 동물의 배설물 청소와 소독이 쉬워야 하고, 사육설비의 재질은 청소, 소독 및 건조가 쉽고 부식성이 없어야 한다.

라) 사육설비는 동물이 쉽게 부술 수 없어야 하고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마) 번식이 가능한 12개월 이상이 된 개 또는 고양이 50마리당 1명 이상의 사육·관리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다목의 다중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에서 다음의 요건에 따라 개 또는 고양이를 소규모로 생산하는 경우에는 동물의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음방지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1) 체중 5킬로그램 미만: 20마리 이하

(2) 체중 5킬로그램 이상 15킬로그램 미만: 10마리 이하

(3) 체중 15킬로그램 이상: 5마리 이하

2) 사육실

가) 사육실이 외부에 노출된 경우 직사광선, 비바람, 추위, 및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나) 사육설비의 크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사육설비의 가로 및 세로는 각각 사육하는 동물의 몸길이의 2.5배 및 2배(동물의 몸길이 8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2배) 이상일 것

(2) 사육설비의 높이는 사육하는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 이상일 것

다) 개의 경우에는 운동공간을 설치하고, 고양이의 경우에는 배변시설, 선반 및 은신처를 설치하는 등 동물의 특성에 맞는 생태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라) 사육설비는 사육하는 동물의 배설물 청소와 소독이 쉬운 재질이어야 한다.

마) 사육설비는 위로 쌓이지 않아야 한다. 다만, 2018년 3월 22일 전에 동물생산업의 신고를 하고 설치된 사육설비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설비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2단까지만 쌓을 것

(2) 충격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설치될 것

바) 사육설비의 바닥은 망으로 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2018년 3월 22일 전에 동물생산업의 신고를 하고 설치된 사육설비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설비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사육동물의 발이 빠지지 않도록 사육설비 바닥의 망 사이 간격이 촘촘하게 되어 있을 것

(2) 사육설비 바닥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에 평평한 판을 넣어 동물이 누워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

3) 분만실

가) 새끼를 가지거나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별도로 구획되어야 한다.

나) 분만실의 바닥과 벽면은 물 청소와 소독이 쉬워야 하고, 부식되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

다) 분만실의 바닥에는 망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라) 직사광선, 비바람, 추위 및 더위를 피할 수 있어야 하며, 동물의 체온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4) 격리실

가) 전염성 질병이 다른 동물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별도로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토끼, 페렛, 기니피그 및 햄스터의 경우 개별 사육시설의 바닥, 천장 및 모든 벽(환기구를 제외한다)이 유리, 플라스틱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질로 만들어진 경우는 해당 개별 사육시설이 격리실에 해당하고 분리된 것으로 본다.

나) 격리실의 바닥과 벽면은 물 청소와 소독이 쉬워야 하고, 부식되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

다) 격리실에 보호 중인 동물에 대해서 외부에서 상태를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동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동물수입업

1) 사육실과 격리실을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2)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동물의 생태적 특성에 따라 채광 및 환기가 잘 되어야 한다.

3) 사육설비의 바닥은 지면과 닿아 있어야 하고, 동물의 배설물 청소와 소독이 쉬운 재질이어야 한다.

4) 사육설비는 직사광선, 비바람, 추위 및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5) 개 또는 고양이의 경우 50마리당 1명 이상의 사육·관리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6) 격리실은 가목4)의 격리실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다. 동물판매업

1) 일반 동물판매업의 기준

가) 사육실과 격리실을 분리하여 설치해야 하며, 사육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동물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크기여야 한다.

(1) 사육설비의 가로 및 세로는 각각 사육하는 동물의 몸길이의 2배 및 1.5배 이

상일 것

(2) 사육설비의 높이는 사육하는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 이상일 것

나) 사육설비는 직사광선, 비바람, 추위 및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하고, 사육설비를 2단 이상 쌓은 경우에는 충격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와 동물의 체온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 토끼, 페릿, 기니피그 및 햄스터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추지 않더라도 같은 건물에 있는 급수시설 또는 배수시설을 이용하여 청결유지와 위생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필요한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마) 개 또는 고양이의 경우 50마리당 1명 이상의 사육·관리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바) 격리실은 동물생산업의 격리실 기준을 적용한다.

2) 경매방식을 통한 거래를 알선·중개하는 동물판매업의 경매장 기준

가) 접수실, 준비실, 경매실 및 격리실을 각각 구분(선이나 줄 등으로 나누어진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설치해야 한다.

나) 3명 이상의 운영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다) 전염성 질병이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소독발판 등의 소독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 접수실에는 경매되는 동물의 건강상태를 검진할 수 있는 검사장비를 구비해야 한다.

마) 준비실에는 경매되는 동물을 해당 동물의 출하자별로 분리하여 넣을 수 있는 설비를 준비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설비는 동물이 쉽게 부술 수 없어야 하고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바) 경매실에 경매되는 동물이 들어 있는 설비를 2단 이상 쌓은 경우 충격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사) 영 별표 3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해야 한다.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상거래(이하 "전자상거래"라 한다) 방식만으로 반려동물의 판매를 알선 또는 중개하는 동물판매업의 경우에는 제1호의 공통 기준과 1)의 일반 동물판매업의 기준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라. 동물장묘업

1)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은 장례 준비실과 분향실을 갖추어야 한다.

2)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및 동물수분해장시설

가) 동물화장시설의 화장로는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완전히 연소할 수 있는 구조로 영업장 내에 설치하고, 영업장 내의 다른 시설과 분리되거나 별도로 구획되어야 한다.

나) 동물건조장시설의 건조·멸균분쇄시설은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완전히 건조하거나 멸균분쇄할 수 있는 구조로 영업장 내에 설치하고, 영업장 내의 다른 시설과 분리되거나 별도로 구획되어야 한다.

다) 동물수분해장시설의 수분해시설은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완전히 수분해할 수 있는 구조로 영업장 내에 설치하고, 영업장 내의 다른 시설과 분리되거나 별도로 구획되어야 한다.

라)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및 동물수분해장시설에는 연소, 건조·멸균분쇄 및 수분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매연, 분진, 폐수 또는 악취를 방지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마) 영 별표 3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해야 한다.

3) 냉동시설 등 동물의 사체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4) 동물 전용의 봉안시설은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야 하고, 유골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지판이 붙어 있어야 한다.

5) 1)부터 4)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장묘업 시설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6)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1)부터 5)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화장로의 개수 등 동물장묘업의 시설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등록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43조제1항 관련)

1. 공통 기준

가.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분리(벽이나 층 등으로 나누어진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분리하지 않을 수 있다.

- 1) 영업장(동물장묘업은 제외한다)과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이하 "동물병원"이라 한다)의 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 2) 영업장과 금붕어, 앵무새, 이구아나 및 거북이 등을 판매하는 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나. 영업 시설은 동물의 습성 및 특징에 따라 채광 및 환기가 잘 되어야 하고, 동물을 위생적으로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온도와 습도 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다. 청결 유지와 위생 관리에 필요한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바닥은 청소와 소독을 쉽게 할 수 있고 동물들이 다칠 우려가 없는 재질이어야 한다.

라. 설치류나 해충 등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해야 하고, 소독약과 소독장비를 갖추고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마. 영업장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해야 한다.

2. 개별 기준

가. 동물전시업

- 1) 전시실과 휴식실을 각각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 2) 전염성 질병의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출입구에 손 소독제 등 소독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3) 전시되는 동물이 영업장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출입구에 이중문과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4) 개의 경우에는 운동공간을 설치하고, 고양이의 경우에는 배변시설, 선반 및 은신처

를 설치하는 등 전시되는 동물의 생리적 특성을 고려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개 또는 고양이의 경우 20마리당 1명 이상의 관리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나. 동물위탁관리업

- 1) 동물의 위탁관리실과 고객응대실은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동물판매업, 동물전시업 또는 동물병원을 같이 하는 경우에는 고객응대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 2) 위탁관리하는 동물을 위한 개별 휴식실이 있어야 하며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3) 위탁관리하는 동물이 영업장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출입구에 이중문과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4) 동물병원을 같이 하는 경우 동물의 위탁관리실과 동물병원의 입원실은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 5) 개 또는 고양이 20마리당 1명 이상의 관리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 6) 영 별표 3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할 것

다. 동물미용업

- 1) 고정된 장소에서 동물미용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가) 미용작업실, 동물대기실 및 고객응대실은 분리 또는 구획되어 있을 것. 다만, 동물판매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또는 동물병원을 같이 하는 경우에는 동물대기실과 고객응대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 나) 미용작업실에는 미용을 위한 미용작업대와 충분한 작업 공간을 확보하고, 미용작업대에는 동물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고정장치를 갖추어 것
 - 다) 미용작업실에는 소독기 및 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 것
 - 라) 미용작업실에는 동물의 목욕에 필요한 충분한 크기의 욕조, 급·배수시설, 냉·온수설비 및 건조기를 갖추어 것
 - 마) 영 별표 3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할 것

2) 자동차를 이용하여 동물미용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가) 동물미용업에 이용하는 자동차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할 것. 이 경우 동물미용업에 이용하는 자동차는 동물미용업의 영업장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승합자동차(특수형으로 한정한다) 또는 특수자동차(특수용도형으로 한정한다)

(2)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동물미용업 용도로 튜닝한 자동차

나) 영업장은 오·폐수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하고, 영업장에는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 것

(1) 물을 저장·공급할 수 있는 급수탱크와 배출밸브가 있는 오수탱크를 각각 100리터 이상의 크기로 설치하되, 각 탱크 표면에 용적을 표기할 것

(2) 조명 및 환기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창문 또는 섀루프 등 자동차의 환기장치를 이용하여 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기개폐기를 설치할 것

(4) 자동차 내부에 누전차단기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에 따라 소화설비를 갖추어 것

(5) 자동차에 부품·장치 또는 보호장구를 장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

다) 미용작업실을 두되, 미용작업실에는 미용을 위한 미용작업대와 충분한 작업 공간을 확보할 것

라) 미용작업대에는 동물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고정장치를 갖추되, 미용작업대의 권장 크기는 아래와 같다.

(1) 소·중형견에 대한 미용작업대: 가로 75cm×세로 45cm×높이 50cm 이상

(2) 대형견에 대한 미용작업대: 가로 100cm×세로 55cm 이상

마) 미용작업실에는 동물의 목욕에 필요한 충분한 크기의 욕조, 급·배수시설, 냉·온수설비 및 건조기를 갖추어 것

바) 미용작업실에는 소독기 및 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 것

사) 영 별표 3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할 것

라. 동물운송업

1) 동물을 운송하는 자동차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한다. 이 경우 동물운송업에 이용되는 자동차는 동물운송업의 영업장으로 본다.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일반형으로 한정한다)

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화물자동차(경형 또는 소형 화물자동차로서, 밴형인 화물자동차로 한정한다)

2) 동물을 운송하는 자동차는 다음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가) 직사광선 및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 것

나) 적절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설비를 갖추어 것

다) 이동 중 갑작스러운 출발이나 제동 등으로 동물이 상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 것

라) 이동 중에 동물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마) 운전자 및 동승자와 동물의 안전을 위해 차량 내부에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과 동물이 위치하는 공간이 구획되도록 망, 격벽 또는 가림막을 설치할 것

바) 동물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 이동장(케이지) 또는 안전벨트를 설치하고, 이동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운송 중 이동장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장치를 갖추어 것

사) 동물운송용 자동차임을 누구든지 쉽게 알 수 있도록 차량 외부의 옆면 또는 뒷면에 동물운송업을 표시하는 문구를 표시할 것

아) 영 별표 3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할 것

3) 동물을 운송하는 인력은 2년 이상의 운전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영업자와 그 종사자의 준수사항(제50조 관련)

1. 공통 준수사항

가. 영업장 내부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게시 또는 부착해야 한다. 다만,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해당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1)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및 동물미용업: 영업등록(허가)증 및 요금표

2) 동물운송업: 영업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운전자 성명 및 요금표

나. 동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사육·관리해야 한다.

다. 동물은 종류별, 성별(어리거나 중성화된 동물은 제외한다) 및 크기별로 분리하여 관리해야 하며, 질환이 있거나 상해를 입은 동물, 공격성이 있는 동물, 늙은 동물, 어린 동물(어미와 함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새끼를 배거나 젖을 먹고 있는 동물은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

라. 영업장에 새로 들어온 동물에 대해서는 체온의 적정 여부, 외부 기생충과 피부병의 존재 여부 및 배설물의 상태 등 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마. 영업장이나 동물운송차량에 머무는 시간이 4시간 이상인 동물에 대해서는 항상 깨끗한 물과 사료를 공급하고, 물과 사료를 주는 용기를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바. 시정명령이나 시설개수명령 등을 받은 경우 그 명령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사. 영업장에서 발생하는 동물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아. 동물판매업자, 동물수입업자, 동물생산업자, 동물전시업자 및 동물위탁관리업자는 각각 판매, 수입, 생산, 전시 및 위탁관리하는 동물에 대해 별지 제36호 서식 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비치해야 하며, 우리 또는 개별사육시설에 개체별 정보(품종, 암수, 출생일, 예방접종 및 진료사항 등)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니피그와 햄스터의 경우 무리별로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할 수 있다.

자. 동물판매업자, 동물수입업자 및 동물생산업자는 입수하거나 판매한 동물에 대해서 그 내역을 기록한 거래내역서와 개체관리카드를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차. 동물장묘업자, 동물위탁관리업자 및 동물미용업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거나 녹화·기록한 정보를 촬영 또는 녹화·기록한 날부터 30일간 보관해야

하며, 동물운송업자는 3일간 보관해야 한다.

카. 동물생산업자 및 동물전시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 시 처리계획서에 따라 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등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타. 동물전시업자, 동물위탁관리업자, 동물미용업자 및 동물운송업자는 각각 전시, 위탁관리, 미용 및 운송하는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인 경우에는 해당 동물의 소유자등에게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사항 및 등록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2. 개별 준수사항

가. 동물장묘업자

1) 동물의 소유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식대로 동물의 사체를 처리해야 한다.

2) 동물의 사체를 처리한 경우에는 동물의 소유자등에게 다음의 서식에 따라 작성된 장례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다만, 동물장묘업자는 필요하면 서식에 기재사항을 추가하거나 기재사항의 순서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식을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

영업등록번호:
장례(화장, 건조장, 수분해장) 확인서(예시)

업 체 명

■ 장례 의뢰인 정보

성 명		동물등록번호	
주 소		동물병원 상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 반려동물 정보

동물 소유자 (관리자)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전자우편 주소	
이름(나이)	살	등록번호	
태어난 날		무게	kg
죽은 날		동물의 종류	예시) 개 고양이, 햄스터 등 동물의 종류 기재
잔재의 처리방법			

위 동물은 0000. 00. 00. 동물 장례식장 "○○○○"에서 장례(화장, 건조장, 수분해장)를 진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동물 장례식장 ○○○ 대표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 3) 등록대상동물의 사체를 처리한 경우에는 처리 후 30일 이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해당 동물장묘시설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가) 동물장묘업 허가번호, 업소명 및 전화번호

나) 처리일자

다) 동물등록번호

라) 처리방법(화장, 건조장, 수분해장)

마) 가)부터 라)까지에 따른 등록대상동물 사체 처리내역서의 예시는 다음과 같고, 동물장묘업자는 필요하면 기재사항을 추가하거나 기재사항의 순서를 변경하는 등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

등록대상동물 사체 처리내역서(예시)

1. 업체정보						
업체명		허가번호		연락처		
2. 처리내역						
순번	처리일자	동물등록번호	처리 방법			기타
			화장	건조장	수분해장	

- 4)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또는 동물수분해장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해야 한다.
- 5)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동물화장시설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등 오염물질을 6개월마다 1회 이상 측정을 받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6)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또는 동물수분해장시설이 별표 11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기검사를 동물화장시설 및 동물수분해장시설은 3년마다 1회 이상, 동물건조장시설은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해야 한다.

- 7) 동물의 사체를 처리한 경우에는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에게 등록 사항의 변경신고 절차를 알려주어야 한다.
- 8) 동물장묘업자는 신문,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영업을 홍보하려는 때에는 영업등록증을 함께 게시해야 한다.
- 9) 별지 제38호서식의 영업자 실적 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동물판매업자

- 1) 동물을 실물로 보여주지 않고 판매해서는 안 된다.
- 2) 다음의 월령(月齡) 이상인 동물을 판매, 알선 또는 중개해야 한다.
가) 개·고양이: 2개월 이상
나) 그 외의 동물: 젖을 떼 후 스스로 사료 등 먹이를 먹을 수 있는 월령
- 3) 미성년자에게는 동물을 판매, 알선 또는 중개해서는 안 된다.
- 4) 동물 판매, 알선 또는 중개 시 해당 동물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구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한다.
가) 동물의 습성, 특징 및 사육방법
나)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등록 및 변경신고 방법·기간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등 동물등록제도의 세부내용
- 5)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계약서와 해당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판매할 때 제공해야 하며, 계약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영업장 내부(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휴대전화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가) 동물판매업 등록번호, 업소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동물의 출생일자 및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다) 동물을 생산(수입)한 동물생산(수입)업자 업소명 및 주소
라) 동물의 종류, 품종, 색상 및 판매 시의 특징
마) 예방접종, 약물투여 등 수의사의 치료기록 등
바) 판매 시의 건강상태와 그 증빙서류
사) 판매일 및 판매금액
아) 판매한 동물에게 질병 또는 사망 등 건강상의 문제가 생긴 경우의 처리방법
자) 등록된 동물인 경우 그 등록내역
- 6) 5)에 따른 계약서의 예시는 다음과 같고, 동물판매업자는 다음 계약서의 기재사항을 추가하거나 순서를 변경하는 등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

반려동물 매매 계약서(예시)

1. 계약내용

매매(분양)금액	금 원 정 (₩)	인도(분양)일	년 월 일
----------	------------	---------	-------

2. 반려동물 기본 정보

동물의 종류		품 종		성별	암 / 수
출생일		부		모	
입수일		생산자/수입자 정보	업소명 및 주소, 전화번호		
털색		동물등록번호 (등록대상 동물만 적습니다)			
특징					

3. 건강상태 및 진료 사항(예방접종기록 포함)

현재 상태	[]양호 []이상 []치료 필요			중성화 여부	[]예 []아니오
세부 기록	일자	질병명 또는 상태	처치내역		비고

4. 분쟁해결기준

1) 구입 후 15일 이내 폐 사한 경우	동물의 반려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 금액 환급(다만,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폐 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음)
2) 구입 후 15일 이내 질 병이 발생한 경우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 다만, 업소 책 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 시에는 동종의 반 려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3)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 은 경우	계약해제(다만, 구입 후 7일 이내)

5. 매수인(입양인) 주의사항

- 반려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자가 반려동물별로 작성합니다.
- 다만,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할 수 있어 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이 제한될 수 있는 주의사항은 일반적인 주의사항
과 구분하여 적시합니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 서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매도인 (분양인)	주소				서명 날인	(인)
	영업등록번호					
	연락처		성명			
매수인 (입양인)	주소				서명 날인	(인)
	연락처		성명			

7) 별표 11 제2호다목2)에 따른 기준을 갖추지 못한 곳에서 경매방식을 통한 동물
의 거래를 알선·중개해서는 안 된다.

8) 온라인을 통해 홍보하는 경우에는 등록번호, 업소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해야 한다.

9) 동물판매업자 중 경매방식을 통한 거래를 알선·중개하는 동물판매업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경매수수료를 경매참여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나) 경매일정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경매일 10일 전까지 통보해야 하고, 통
보한 일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경매일 3일 전까
지 통보해야 한다.

다) 수의사로 하여금 경매되는 동물에 대해 검진하도록 해야 한다.

라) 준비실에서는 경매되는 동물이 식별이 가능하도록 구분해야 한다.

마) 경매되는 동물의 출하자로부터 별지 제36호서식의 동물생산·판매·수입
업 개체관리카드를 제출받아 기재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제출받은 개체관
리카드에 기본정보, 판매일, 건강상태·진료사항, 구입기록 및 판매기록이
기재된 경우에만 경매를 개시해야 한다.

바) 경매방식을 통한 거래는 경매일에 경매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사) 경매에 참여하는 자에게 경매되는 동물의 출하자과 동물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아) 경매 상황을 녹화하여 30일간 보관해야 한다.

10) 별지 제38호서식의 영업자 실적 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 동물수입업자

1) 동물수입업자는 수입국과 수입일 등 검역과 관련된 서류 등을 수입일로부터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2) 별지 제38호서식의 영업자 실적 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동물수입업자가 동물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물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라. 동물생산업자

1) 사육하는 동물에게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운동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2) 사육실 내 질병의 발생 및 확산에 주의하여야 하고, 백신 접종 등 질병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취한 후 개체관리카드에 이를 기입하여 관리해야 한다.
- 3) 사육·관리하는 동물에 대해서 털 관리, 손·발톱 깎기 및 이빨 관리 등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동물을 건강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그 내역을 기록해야 한다.
- 4) 월령이 12개월 미만인 개·고양이는 교배 및 출산시킬 수 없고, 출산 후 다음 출산 사이에 10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 5) 개체관리카드에 출산 날짜, 출산동물 수, 암수 구분 등 출산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관리해야 한다.
- 6) 노화 등으로 번식능력이 없는 동물은 보호하거나 입양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를 목적으로 거래해서는 안 된다.
- 7) 질병이 있거나 상해를 입은 동물은 즉시 격리하여 치료받도록 하고, 해당 동물이 회복될 수 없거나 다른 동물에게 질병을 옮기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높다고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에는 수의사가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안락사 처리내역, 사유 및 수의사의 성명 등을 개체관리카드에 기록해야 한다.
- 8) 별지 제38호서식의 영업자 실적 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9) 동물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 동물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마. 동물전시업자

- 1) 전시하는 개 또는 고양이는 월령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등록대상 동물인 경우에는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 2) 전시된 동물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예방접종과 구충을 실시하고, 매년 1회 검진을 해야 하며,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격리한 후 수의사의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해야 한다.
- 3) 전시하는 개 또는 고양이는 안전을 위해 체중 및 성향에 따라 구분·관리해야 한다.
- 4) 영업시간 중에도 동물이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5) 전시하는 동물은 하루 10시간 이내로 전시해야 하며, 10시간이 넘게 전시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휴식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 6) 동물의 휴식 시에는 몸을 숨기거나 운동이 가능한 휴식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 7) 깨끗한 물과 사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하며, 사료나 간식 등을 과도하게 섭취

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

- 8) 전시하는 동물의 배설물은 영업장과 동물의 위생관리, 청결유지를 위해서 즉시 처리해야 한다.
- 9) 전시하는 동물을 생산이나 판매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바. 동물위탁관리업자

- 1) 위탁관리하고 있는 동물에게 정기적으로 운동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2) 사료나 간식 등을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
- 3) 동물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 4) 위탁관리하고 있는 동물에게 건강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상 행동을 하는 경우 즉시 소유주에게 알려야 하며 병원 진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5) 위탁관리하고 있는 동물은 안전을 위해 체중 및 성향에 따라 구분·관리해야 한다.
- 6) 영업자는 위탁관리하는 동물에 대한 다음의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제공해야 한다.
 - 가) 등록번호, 업소명 및 주소, 전화번호
 - 나) 위탁관리하는 동물의 종류, 품종, 나이, 색상 및 그 외 특이사항
 - 다)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기간 및 비용
 - 라) 위탁관리하는 동물에게 건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리방법
 - 마) 위탁관리하는 동물을 위탁관리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일정기간 찾아가지 않는 경우의 처리 방법 및 절차
- 7) 동물을 위탁관리하는 동안에는 관리자가 상주하거나 관리자가 해당 동물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사. 동물미용업자

- 1) 동물에게 건강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 2) 소독한 미용기구와 소독하지 않은 미용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해야 한다.
- 3) 미용기구의 소독방법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이용기구 및 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 4) 미용을 위하여 마취용 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수의사법」 등 관련 법령의 기준에 따른다.

아. 동물운송업자

- 1) 법 제11조에 따른 동물운송에 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2) 동물의 질병 예방 등을 위해 동물을 운송하기 전과 후에 동물을 운송하는 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 3) 동물의 종류, 품종, 성별, 마릿수, 운송일 및 소독일자를 기록하여 비치해야 한다.
- 4) 2시간 이상 이동 시 동물에게 적절한 휴식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 5) 2마리 이상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개체별로 분리해야 한다.
- 6) 동물의 운송 운임은 동물의 종류, 크기 및 이동 거리 등을 고려하여 산정해야 하고, 소유주 등 사람의 동승 여부에 따라 운임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4]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54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다른 법률에 별도의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기준에 따르며 영업정지처분기간 1개월은 30일로 본다.
 -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다.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 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마.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수 있다.
- 1) 가중사유
 -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감경사유
 -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해당 영업을 모범적으로 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라)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 마) 그 밖에 해당 영업에 대한 정부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법 제83조 제1항제1호	등록(허가) 취소		
나. 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법 제83조 제1항제2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다. 허가를 받은 날 또는 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지나도 영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 제1항제3호	등록(허가) 취소		
라. 법 제69조제1항 또는 제73조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 사항과 다른 방식으로 영업을 한 경우	법 제83조 제1항제4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마. 법 제69조제4항 또는 제73조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 제1항제5호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바. 법 제69조제3항 또는 제73조 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83조 제1항제6호			

1) 동물판매업자(경매방식을 통한 거래를 알선·중개하는 동물판매업자로 한정한다) 및 동물생산업자의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2) 1) 외의 영업자의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사. 제72조에 따라 설치가 금지된 곳에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한 경우	법 제83조 제1항제7호	등록(허가) 취소		
아.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83조 제1항제8호	등록(허가) 취소		
자. 법 제7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 제1항제9호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1) 동물판매업자(경매방식을 통한 거래를 알선·중개하는 동물판매업자로 한정한다) 및 동물생산업자의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2) 1) 외의 영업자의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등록 등 수수료(제58조 관련)

1.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가. 신규

- 1)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는 경우: 1만원(무선식별장치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하여야 한다)
- 2)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부착하는 경우: 3천원(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하여야 한다)

나. 변경신고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죽은 경우 또는 등록대상동물 분실신고 후 다시 찾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 무료

2. 영업의 허가·등록·신고 등

가. 영업허가 또는 영업등록(변경허가 또는 변경등록을 포함한다): 1만원

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1만원

다. 허가사항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5천원

라. 등록증 또는 허가증의 재교부: 5천원

동물등록 신청서

※ 뒷면의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고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	------	-----	----------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현재 거주지가 주소와 다를 경우 현재 거주지 주소를 함께 기재합니다.			
동물관리자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성명	직위	전화번호	관리장소(주소)

동물	동물등록번호								
	이름	품종	털색깔	성별		중성화		출생일	특이사항
				암	수	여	부		

「동물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1만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2.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의]

1. 동물등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위 신청인의 정보와 신청내용을 등록 유효기간 동안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 유기·유실동물의 반환 등의 목적으로 등록동물의 소유자의 정보와 등록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등록동물의 소유자는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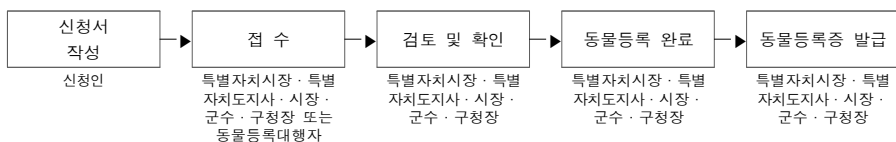
- 가.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명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변경된 경우
- 나.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다. 소유자의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변경된 경우
- 라. 소유자의 전화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전화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변경된 경우
- 마. 등록동물을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는 경우
- 바.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사. 등록동물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아. 무선식별장치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는 경우

2. 잃어버린 동물에 대한 정보는 동물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 공고됩니다.

3.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전입신고 시 변경신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4.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또는 등록동물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에는 동물정보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변경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앞쪽)

동물등록증

동물의 정보

동물등록번호 :
 이름 : 동물종 :
 성별 : 암/수 중성화 : 0/X
 출생일 : 털색깔 :
 최초등록일 : 최종변경일 :

소유자 정보

성명(법인명) : 전화번호 :

「동물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100mm×60mm[백상지(150g/㎡)]

(뒤쪽)

동물관리자(법인의 경우)

성명 : 직위 : 전화번호 :

특이사항:

* 등록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소유자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비고 : 동물등록증의 재질과 규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

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소유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동물관리자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성명	직위	전화번호	
동물	이름	동물등록번호		
재발급사유	[] 분실·열실 [] 훼손 [] 기타			
분실사유				

「동물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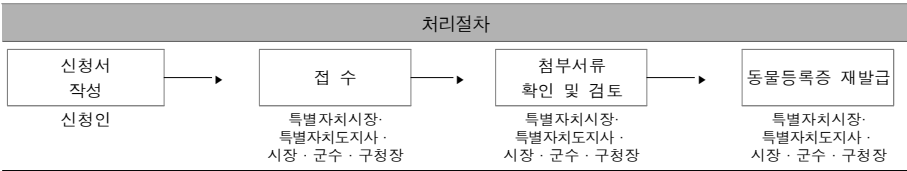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2.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무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종질지(80g/㎡)]

동물등록 변경신고서

※ 아래의 신고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고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기재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변경사항란은 해당 사항이 있는 항목에만 기재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동물관리자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	성명	직위	전화번호	
동물	이름	동물등록번호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 소유자 변경 [] 소유자의 정보변경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무선식별 장치를 잃어버리거나 바다나 해외에서 뺏겨짐	동물등록번호		
그외	[] 등록동물을 잃어버림 [] 잃어버린 등록동물을 다시 찾음 [] 등록동물이 죽음 [] 등록동물을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음 [] 기타			

변경사항 발생일

등록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또는 등록동물을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는 경우 그 경위(날짜, 장소, 사유 등)

「동물보호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등록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동물등록증	수수료 무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2.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종질지(80g/㎡)]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동의]

1. 동물등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위 신고인의 정보와 신고내용을 등록 유효기간 동안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 유기·유실동물의 반환 등의 목적으로 등록동물의 소유자의 정보와 등록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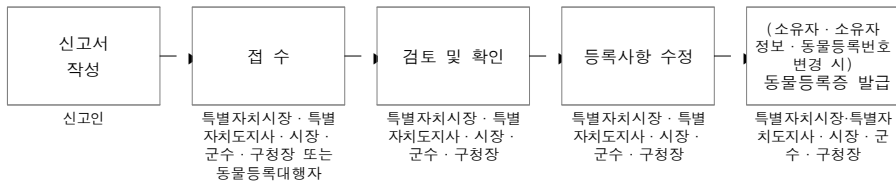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를 모두 작성합니다.
2. 소유자의 정보 중 일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항목만 작성합니다.
3. 동물의 이름 등 등록동물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 의무는 없으나 동물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잃어버린 등록동물의 정보는 동물정보시스템에 공고됩니다.
5. 소유자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등록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등에는 동물정보시스템을 통해 변경 신고할 수 있습니다.
6.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사유로 변경신고 후 1년 동안 등록동물을 다시 찾은 사유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록사항이 말소됩니다.
7. 등록동물이 죽은 사유로 변경신고 한 경우 1년이 지나면 등록사항이 말소됩니다.

처리절차



동물보호센터 지정신청서

※ 아래의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시고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40일

신청인	기관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구조·보호 대상 동물	
----------------	--

「동물보호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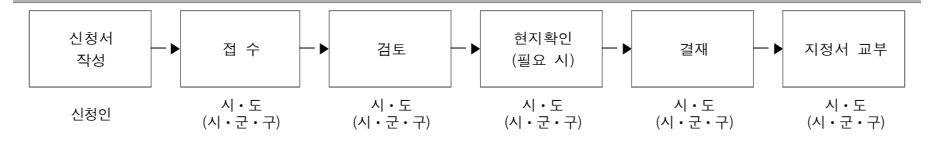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기준을 충족하는 증명하는 자료 2. 동물의 구조·보호조치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의 명세서 1부 3. 동물의 구조·보호조치에 종사하는 인력현황 1부 4. 동물의 구조·보호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5. 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1.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고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검토 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시설 및 인력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민간동물보호시설 변경신고서

([] 운영자, [] 시설 명칭, [] 주소, [] 면적 및 수용가능 마릿수)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	-----	---------

신고인	성명(법인·단체는 법인·단체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법인·단체)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시설 현황	시설명(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 성명
	주소	

변경사항

변경 전

시설명

시설의 장 성명

생년월일

시설 주소

보호규모

축종별 보호 마리수

총 [] 마리

개 []마리

고양이 []마리

기타 동물 []마리

변경 후

시설명

시설의 장 성명

생년월일

시설 주소

보호규모

축종별 보호 마리수

총 [] 마리

개 []마리

고양이 []마리

기타 동물 []마리

변경 사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운영자, [] 시설 명칭, []주소, []면적 및 수용가능 마릿수) 변경을 신고합니다.

100 100 100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명칭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 1부
2.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장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 및 변경된 시설의 장의 이력서 각 1부
3.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 소재지 변경에 대한 조치계획서 각 1부
4. 사육규모를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 보호동물에 대한 조치계획서 각 1부
5.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증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신고서 접수

검토

결재

통보

신고인

시 · 군 · 구(동물보호업무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 호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증

1. 시설의 명칭:
2. 운 영 자 : (생년월일 : - xxxxxxxx)
3. 소 재 지 :
4. 보호 시설 : 총 m²
(사육실 m², 격리실 m², 사료보관실 m², 기타 m²)
5. 보호규모 : 총 마리
(개: 마리, 고양이: 마리, 기타동물: 마리)
6. 사업자등록번호:

「동물보호법」 제3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민간동물보호시설([] 일시운영중단, [] 영구폐쇄, [] 운영재개) 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	-----	---------

신고인	성명(법인·단체는 법인·단체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법인·단체)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시설 현황	시설 명칭	
	주소	
	운영중단 기간	폐쇄일·재개일

사 유

보호동물 조치계획	타 동물보호센터에 위탁 () 마리	타 민간동물보호시설에 위탁 () 마리	입양 () 마리	기타
-----------	------------------------	--------------------------	--------------	----

「동물보호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일시운영중단·영구폐쇄 또는 운영재개를 신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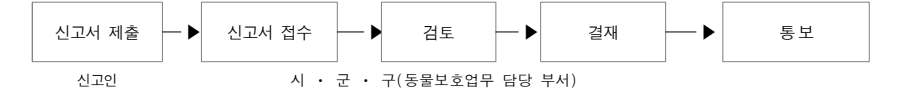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일시운영중단·영구폐쇄·운영재개 사유서 1부 2. 민간동물보호시설내 보호동물에 대한 조치계획서(운영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3.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증(영구폐쇄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보호동물 관리(처리) 계획서

1. 동물 소유자명 : (생년월일 : - xxxxxxxx)
2. 거주지 주소 :
3. 보호동물 관리(처리) 계획

구분	관리(처리) 계획
타 동물보호센터에 위탁	
타 민간동물보호시설에 위탁	
입양	
기타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운영자인 본인은 동물보호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5항에 따라 보호동물에 대한 관리(처리)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보호동물 관리대장

연번	신고내역				구조내역			개체정보						보호내역			처리결과			비고
	신고일	신고자	주소	전화 번호	구조일	장소	구조자	축종	품종	나이	성별	체중	특징	건강 상태	처치 및 치료	기타	처리일	방법	내용	
1																				
2																				
3																				
4																				
5																				
6																				
7																				
8																				
9																				
10																				

364mm×257mm[백상지(80g/㎡)]

학대방지 사육계획서

1. 동물 소유자명: (생년월일 : - xxxxxxxx)
2. 거주지 주소 :
3. 연락처 :
4. 동물정보

동물이름		동물등록번호	
축종(품종)		성별	☐ 암 ☐ 수
동물나이	년 개월 주령	생년월일	☐ 모름
체중 (kg)		증성화여부	☐ 여 ☐ 부 ☐ 모름

5. 사육계획

사육장소	
사육·관리 방법	
기타(양도 등)	

동물의 소유자인 본인은 동물보호법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피학대 동물에 대한 학대방지 사육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성명 (서명 또는 인)

비용징수통지서 (0차)

비용 납부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납부사유				
납부액		원	납부장소	
납부기한	년 월 일까지	산출내역	별 첨	

「동물보호법」 제4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동물의 보호비용을 징수 하려고 하오니 위의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안내	1. 「유실물법」 제12조·「민법」 제253조에도 불구하고 「동물보호법」 제40조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동물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동물의 소유자가 보호비용의 납부기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사육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동물의 소유자를 확인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소유자와 연락이 되지 아니하거나 소유자가 반환받을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물의 소유권이 시·도(시·군·구)로 귀속됩니다.
	2. 「동물보호법」 제43조제2호에 따라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비용의 전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3. 보호비용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에는 보호비용에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이율의 이자가 가산됩니다.
	4.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동물 인수신청서

본인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명)에 아래와 같이 동물의 사육을 포기하며 소유권을 양도합니다.

1. 동물정보

동물이름		동물등록번호	
축종(품종)		성별	☐ 암 ☐ 수
동물나이	년 개월 주령	생년월일	☐ 모름
체중(kg)		중성화여부	☐ 여 ☐ 부 ☐ 모름

2. 포기사유

6개월 이상 장기입원 또는 요양(진단서 등 병원확인서 첨부)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관련 증빙서류 첨부)	
태풍, 수해, 지진 등으로 인한 시설 파손 등(관련 증빙서류 첨부)	
소유자 사망 또는 거주불명(관련 증빙서류 첨부)	
그 밖에 정상적으로 동물을 사육하기 어려운 경우	

개: 본인은 동물보호법 제1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에 해당하는 소유자이며 (동물보호센터명)에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권한이 있습니다. 제3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확인 ☐ (서명:)

고양이: 본인은 입소담당자로부터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통해 해당 동물이 본인 소유임을 확인 받았으며 (동물보호센터명)에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권한이 있습니다. 제3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확인 ☐ (서명:)

본인은 해당 동물의 수의학적 및 행동학적 병력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모두 공개하였으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동물보호센터명)가 필요할 경우 해당 동물이 내원했던 동물병원에 연락하여 필요한 모든 의료정보를 제공받는 데 동의합니다. 동의 ☐ (서명:)

수의사 이름		연락처	
동물병원 주소			

본인은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함과 동시에 모든 이해관계를 포기하며 오늘 이후 동물의 정보에 대해서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해당 동물과의 접촉은 불가능하며 (동물보호센터명)는 동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음을 이해하였습니다. 확인 ☐ (서명:)

소유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	

본인은 위 내용을 모두 읽었으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소유자 :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실적(년) 통보서

(앞쪽)

동물실험 시행기관	명칭
	주소
	전화번호
동물실험 윤리위원회	등록번호
	명칭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E-mail)

「동물보호법」 제54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실적을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이
의
의

동물실험시행기관장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1. 위원 현황 (총 명)		
성 명	전문분야	소속

2. 위원회 개최 횟수 (회)

3. 위원회의 동물실험 실태 확인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가. 동물실험시행기관에 대한 위원회의 확인 및 평가(필요조치 요구 내용을 포함)

나.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 등에 대한 위원회의 확인 및 평가

다. 실험동물의 생산·도입·관리·실험 및 이용과 실험이 끝난 후 해당 동물의 처리에 관한 위원회의 확인 및 평가

4. 위원회의 동물실험계획의 심의 및 승인

심사 건수	승인 건수	변경 승인 건수	미승인 건수
-------	-------	----------	--------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5. 고통의 정도에 따른 동물 사용량

(단위: 마리)

정도		등급 A	등급 B	등급 C	등급 D	등급 E	합계 (C+D+E)	증별 총계 (B+C+D+E)
동물 총								
설 치 류	마우스							
	랫드							
	기니피그							
	햄스터류							
	기타 설치류							
토 끼								
원 송 이 류	원숭이류 (영장류)							
	원숭이류 (비영장류)							
포 유 류	개							
	고양이							
	미니피그							
	돼지							
	소							
	염소							
	기타 포유동물							
조류	조류(닭)							
	기타 조류							
파 충 류								
양 서 류								
어 류								
기타 척추동물								
기 타								
총 계								

등급 A: 생물개체를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세균, 원충 및 무척추동물을 사용한 실험, 교육, 연구, 수술 또는 시험

등급 B: 실험, 교육, 연구, 수술 또는 시험을 목적으로 사육, 적응 또는 유지되는 척추동물

등급 C: 척추동물을 대상으로 고통이나 억압이 없고, 고통을 줄여주는 약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실험, 교육, 연구, 수술 또는 시험

등급 D: 척추동물물 대상으로 고통이나 억압을 동반하는 실험, 교육, 연구, 수술 또는 시험으로서, 적절한 마취제나 진통제 등이 사용된 경우

등급 E: 척추동물물 대상으로 고통이나 억압을 동반하는 실험, 교육, 연구, 수술 또는 시험으로서, 마취제나 진통제 등이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유의사항

- ① 항목 1.의 전문분야의 경우, 수의사, 동물보호전문가, 기타 전문가(세부영역)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② 항목 3.의 경우, 가에서 다까지의 내용이 적힌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③ 위원회의 동물실험계획 심의 및 승인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승인 또는 변경 승인 시 소수 의견과 미승인 사유를 포함)

영업 허가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	------	-----	------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장	명칭(상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업종	[]동물장묘업 - 장례식장: 설치 / 미설치 - 동물화장시설: 설치 / 미설치 - 동물건조장시설: 설치 / 미설치 - 동물수분해장시설: 설치 / 미설치 - 봉안시설: 설치 / 미설치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일반, 알선·중개, 경매 알선·중개) *다수 영업의 허가 신청 시 각각의 영업 허가 신청서 작성 필요	

동물생산업 신청자 작성 항목

생산동물의 종류	개(), 고양이(), 기타()	인력현황(종사자 수)	명
품종별 사육마리 수	종 : 두 (암 ,수) * 사육 품종별로 모두 작성	소규모 생산업 여부 ()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2호가목1)바)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 표시합니다.	
맹견 사육 여부	예(), 아니오()	(참고) 맹견의 범위(「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를 포함한다)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테퍼드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동물보호법」 제6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영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 2. 인력 현황 3. 사업계획서 4.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5. 동물사체에 대한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또는 동물수분해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6. 폐업 시 동물의 처리계획서(동물생산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영업허가 건별 1만원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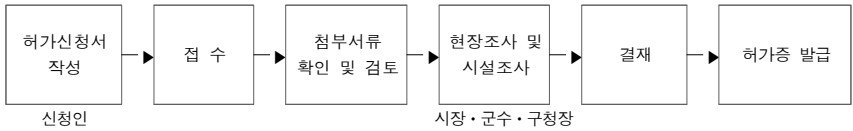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물보호법」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영업허가 내용(영업의 허가 및 등록번호, 업체명, 전화번호, 소재지 등)을 동물보호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른 동물정보시스템에 게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신청인의 업종에 따라 신청업종란의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중 해당되는 업종의 “[]”란에 √ 표시를 하고, ()안의 영업의 세부범위에 표시합니다. 다수의 업종에 대해 동시에 영업허가 신청을 하려면 각각의 영업허가 신청서 작성이 필요하며, 영업허가 처리는 각각의 영업으로 별도 등록합니다.
-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장례식장,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동물수분해장시설, 봉안시설 중 설치·운영하려는 시설 모두에 대하여 설치 여부를 표시합니다.

처리절차



허가번호 제 호

- []동물생산업
- []동물수입업
- []동물판매업
- []동물장묘업

허가증

법인명 (상호명)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의 종류	※ 동물생산업의 경우 생산동물의 종류와 소규모 생산업의 여부를 함께 표시 ※ 동물장묘업의 경우에는 시설(장례식장,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동물수분해장시설, 봉안시설) 설치 여부를 함께 표시		

「동물보호법」 제6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 []동물장묘업
- []동물생산업
- []동물수입업
- []동물판매업(일반, 알선·중개, 경매 알선·중개)

으로 영업을 허가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 []동물생산업
- []동물수입업
- []동물판매업
- []동물장묘업

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 관리대장

1. 영업허가사항

영업장의 명칭 (상호)					
신고번호		허가일자	년	월	일
영업의 종류		영업의 내용			
소재지	(전화 :)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2. 영업허가의 변경사항

연 월 일	변경내용	기재자 (직급·성명)	연 월 일	변경내용	기재자 (직급·성명)

3. 영업장 현황

시설면적	사육실/경매실	m ²	접수실/분만실	m ²
	격리실	m ²	준비실/대기실/ 휴식실/판매실	m ²
	건물소유구분	[]자가 []임대	취급 동물의 종류	
종업원수		명		

4. 기타 행정조치사항

연 월 일	구분	조치내용	기재자 (직급·성명)	연 월 일	구분	조치내용	기재자 (직급·성명)

5. 행정처분사항

처 분 연 월 일	문서번호	위반사항	처분의 내용 및 기간	기재자 (직급·성명)

6. 비고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영업장	명칭(상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업종	[] 동물생산업 [] 동물수입업 [] 동물판매업(일반, 알선·중개, 경매 알선·중개) [] 동물장묘업		
재발급 사유				
허가증 분실사유	※ 허가증을 분실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동물보호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 동물생산업 [] 동물수입업 [] 동물판매업 [] 동물장묘업 허가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허가증	수수료 5천 원
------	-----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 수
시장·군수·구청장

→

서류 검토
시장·군수·구청장

→

결재
시장·군수·구청장

→

허가증 재발급
시장·군수·구청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변경허가 신청서

※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하고,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 수 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신고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영업의 종류		허가 번호	
변경 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자의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영업장의 명칭 (상호)		
	영업시설		
	영업장의 주소		
변경사유			
허가증 분실사유	※ 허가증을 분실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동물보호법」 제6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 동물생산업 [] 동물수입업 [] 동물판매업 [] 동물장묘업의 허가사항 중 변경사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영업자의 성명, 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할 때	허가증	수수료 영업 변경신고 건별로 5천원
	영업시설을 변경할 때	1. 허가증 2. 영업시설의 변경 내역서	
	영업장의 주소를 변경할 때	공통 서류 1. 허가증 2. 영업시설의 변경 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동물생산업 변경신고 시 추가 서류 3.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4. 인력 현황(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5. 사업계획서(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6. 폐업 시 동물의 처리계획서(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동물장묘업 변경신고 시 추가 서류 3. 사업계획서(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4.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5. 동물사체에 대한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또는 동물수분해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담당 공무원 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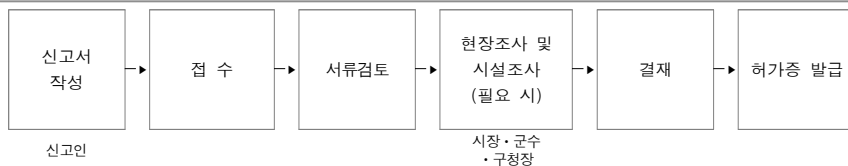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물보호법」 제95조제1항4호에 따른 영업허가 내용(영업의 허가 및 등록번호, 업체명, 전화번호, 소재지 등)을 동물보호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른 동물정보시스템에 게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영업 등록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신청인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명칭(상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장 신청업종	[] 동물전시업 [] 동물위탁관리업 [] 동물미용업 [] 동물운송업 *다수 영업의 등록 신청 시 각각의 영업등록 신청서 작성 필요		

「동물보호법」 제7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등록번호 제 호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록증

첨부서류	1. 인력현황 2.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 3. 사업계획서 4.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2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5. 폐업 시 동물의 처리계획서(동물전시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영업등록 건별 1만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자동차를 이용한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자동차등록증(자동차를 이용한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 동의서

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동물보호법」 제95조제1항4호에 따른 영업허가 내용(영업의 허가 및 등록번호, 업체명, 전화번호, 소재지 등)을 동물보호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른 동물정보시스템에 게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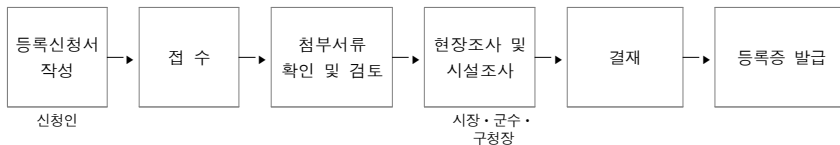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신청인의 업종에 따라 신청업종란의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중 해당되는 업종의 “[]”란에 √ 표시를 하고, ()안의 영업의 세부범위에 표시합니다. 다수의 업종에 대해 동시에 영업등록 신청을 하려면 각각의 영업등록 신청서 작성이 필요하며, 영업등록 처리는 각각의 영업으로 별도 등록합니다.

처리절차



「동물보호법」 제7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으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등록(변경등록, 변경신고) 관리대상

1. 영업등록사항

영업장의 명칭(상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년 월 일

영업의 종류

영업의 내용

소재지

(전화 :)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2. 영업등록의 변경사항

연 월 일

변경내용

기재자
(직급·성명)

연 월 일

변경내용

기재자
(직급·성명)

3. 영업장 현황

시설면적

전시설/위탁관리실

m²

차량번호

접수실/고객응대실

m²

준비실/대기실/휴식실

m²

건물소유구분

[]자가 []임대

취급 동물의 종류

종업원수

명

4. 기타 행정조치사항

연 월 일

구분

조치내용

기재자
(직급·성명)

연 월 일

구분

조치내용

기재자
(직급·성명)

5. 행정처분사항

처 분 연 월 일

문서번호

위반사항

처분의 내용 및 기간

기재자
(직급·성명)

6. 비고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종질지(80g/㎡)]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영업장

명칭(상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업종

[] 동물전시업 [] 동물위탁관리업
[] 동물미용업(일반, 자동차 이용) [] 동물운송업

재발급 사유

등록증 분실사유

※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동물보호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 동물전시업 [] 동물위탁관리업 [] 동물미용업 [] 동물운송업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등록증

수수료
5천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서류 검토

결재

등록증 재발급

신청인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종질지(80g/㎡)]

- 123 -

- 124 -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변경등록신청서

※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하고,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신고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영업의 종류		등록번호	
변경 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자의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영업장의 명칭 (상호)		
	영업시설		
	영업장의 주소		
변경사유			
등록증 분실사유		※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동물보호법」 제7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동물전시업 []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의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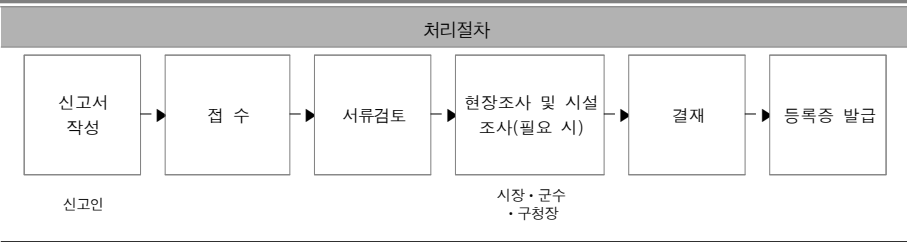
(뒤쪽)

첨부서류	영업자의 성명, 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할 때	등록증	수수료 영업 변경신고 건별로 5천원
	영업시설을 변경할 때	1. 등록증 2. 영업시설의 변경 내역서	
	영업장의 주소를 변경할 때	공통 서류 1. 등록증 2. 영업시설의 변경 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자동차를 이용한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자동차등록증(자동차를 이용한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 동의서

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동물보호법」 제95조제1항4호에 따른 영업허가 내용(영업의 허가 및 등록번호, 업체명, 전화번호, 소재지 등)을 동물보호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른 동물정보시스템에 게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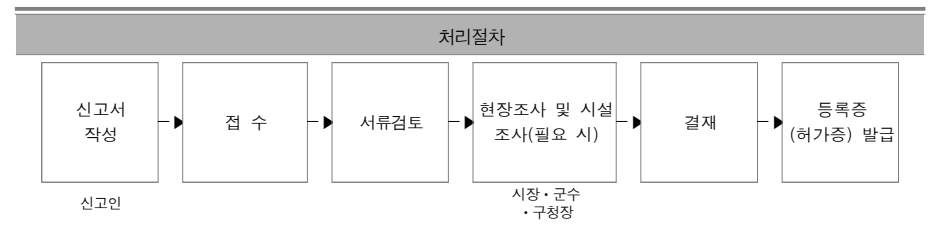


접수 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	------	-----	------

신고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영업의 종류		등록번호	

변경 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장의 명칭(상호)		
	영업장의 전화번호		
	기재사항의 계산착오		
	기재사항의 오키		
	기재사항의 누락		
변경사유			
등록증 분실사유		※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기재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임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일	

승계를 하는 사람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승계를 받는 사람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장	명칭 (상호)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의 종류	[] 동물생산업 [] 동물수입업 [] 동물판매업 [] 동물장묘업 [] 동물전시업 [] 동물위탁관리업 [] 동물미용업 [] 동물운송업	
	등록(허가)번호		
	주소		
승계사유	[] 양도·양수 [] 상속 [] 기타()		

「동물보호법」 제7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자 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뒤쪽)

구분	영업양도·양수의 경우	상속의 경우	그 외의 경우	수수료
첨부서류	1. 양도·양수의 경우 가.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양도인이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상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만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합니다)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없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물보호법」 제95조제1항4호에 따른 영업허가 내용(영업의 허가 및 등록번호, 업체명, 전화번호, 소재지 등)을 동물보호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른 동물정보시스템에 게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행정처분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동물보호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받은 날짜	행정처분 내용	행정처분 사유

※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왼쪽 란에 “없음”이라고 적습니다.

- 양도·양수신고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고 위 란을 보완하도록 해야 합니다.
-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된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제83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및 별표 14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 소:
양수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 소:

유의사항

- 영업자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양도인의 소재물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로서 허가관청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른 방법으로 양도·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영업장의 영업의 종류란에는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중 해당되는 업종의[]란에 √ 표시를 합니다. 해당 업종을 동시에 신청하려면 해당되는 업종 모두에 √ 표시를 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인

시장·군수·구청장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기재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	------	-----	------

신고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장	명칭(상호)					
	주소	(전화번호:)				
	신고업종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요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재개업(폐업)일	년 월 일					
휴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사유						
등록증(허가증) 분실사유						

「동물보호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의 []휴업 []재개업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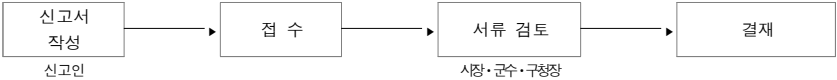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첨부서류	등록증 또는 허가증 원본(폐업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등록증 또는 허가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등록증 또는 허가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1. 휴업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어 재개업을 할 때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리절차



동물처리계획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장	명칭(상호)			
	주소	(전화번호:)		
	신고업종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전시업		
재개업(폐업) 예정일	년 월 일			
휴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사유				
사육·관리 중인 동물의 정보 (축종,품종,두수)				
사육·관리 중인 동물의 처리계획				

「동물보호법」 제7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의 []휴업 []폐업으로 인한 동물처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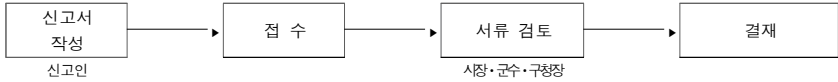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첨부서류	1. 기관, 영업장, 개인에게 분양 시 계약서 등 동물처리를 증명하는 서류 2. 사육·관리 중인 동물의 개체 관리카드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1. 기재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2. 신청인의 업종에 따라 신청업종란의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전시업 중 해당되는 업종의 “[]”란에 √ 표시를 합니다. 해당 업종을 동시에 신청하려면 해당되는 업종 모두에 √ 표시를 합니다.

처리절차



등록대상동물 거래내역 신고서

1. 영업허가사항

영업장의 명칭 (상호)				
허가 번호		허가 일자	년 월 일	
영업의 종류		영업의 내용		
주소	(전화 :)		종사자 수	명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2. 거래내역 (월)

[illegible]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종질지(80g/m²)]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

연번	문서번호 (발송일)	영업장의 명칭(상호)	소 재 지	대표자 (영업자)	위반사항	청문일	처분기준	처분내용 및 기간
1								
2								
3								
4								
5								
6								
7								
8								
9								
10								

364mm×257mm[백상지(80g/m²)]

동물보호관중

(앞쪽)

제 호

동물보호관중

사 진

3cm×4cm

(모자를 벗은 상반신
으로 뒤 그림 없이 6
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기 관 명

60mm×90mm[백상지(150g/㎡)]

(색상: 연노란색)

(뒤쪽)

동물보호관중

소속/직급: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동물보호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명 의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
할 수 없습니다.
2. 동물 보호를 목적으로 출입·검사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이 증명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동물생산·판매·수입업 개체관리카드

※ 햄스터, 기니피그는 무리별로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할 수 있음

*) 기본정보	영업장의 명칭(상호) (대표자)			영업등록 (허가)번호				
	주소	(전화번호)						
	동물의 종류	품종		성별	암 / 수			
	개체관리번호	출생일		특징(털색 등)				
생 산 업 자 기 록 사 항	판매동물 개체정보	*) 판매일		*) 판매처	영업자의 명칭(상호)			
					등록(허가)번호			
					연 락 처			
		*) 건강상태· 진료사항	날짜	질병 또는 건강상태, 처리내역 등				
		어 미 동 물 정 보	개체관리번호		품종		출생년도	
			출산일	출산마릿수 마리(암 , 수)				
			건강정보	날짜	질병명(유전병력 포함), 처리내역 등			
판 매 업 자 · 수 입 업 자 기 록 사 항	거래기록	*) 구입 기록	영업장의 명칭 (상호)		*) 판매기록	판매일		
			등록(허가)번호			구입자		
			수입국가	※수입업만 해당		연락처		
			연 락 처			판매 시 동물등록 여부	○ / ×	
		수의사 진료사항						
		동물등록번호 (등록대상 동물만 해당)						
		*) 경매 정보	경매업체		영업등록번호			
			경매일		낙찰자(업체명)			
			수의사	(서명 또는 인)	수의사 확인사항			
		특이사항						

*)은 필수 기재 사항으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종질지(80g/㎡)]

동물전시업·위탁관리업 개체관리카드

※ 햄스터, 기니피그는 무리별로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할 수 있음

기본정보	영업장의 명칭(상호) (대표자)				영업등록 번호			
	주소	(전화번호)						
	동물의 종류		품종		성별	/ 수		
	개체관리번호 (전시업만 해당)		출생일		특징(털색 등)			
	건강상태				동물등록 여부	○ / ×		
동물등록번호 (등록대상 동물만 해당함)								
위탁기록사항	위탁자 (연락처)				위탁 내용	☐ 사육 ☐ 훈련 ☐ 보호		
	위탁기간	~			특이 사항			
	기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영업자 실적 보고서

(앞쪽)

1. 영업등록(허가)사항

영업장의 명칭 (상호)					
등록(허가)번호	등록(허가)일자		년 월 일		
영업의 종류	영업의 내용				
주소	(전화 :)		종사자 수	명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2. 영업장 현황

동물장묘업	장례식장	㎡	동물 화장 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동물수분해장시설	㎡	봉안시설	㎡
	화장로/ 건조·멸균분쇄시설/ 수분해시설 (규격 및 수량)					
동물판매업 (일반, 알선·중개)	사육실	㎡	격리실	㎡		
동물판매업 (경매 알선·중개)	건물소유구분	[]자가 []임대	취급 동물의 종류			
	접수실	㎡	준비실	㎡		
	경매실	㎡	격리실	㎡		
동물수입업	건물소유구분	[]자가 []임대	취급 동물의 종류			
	사육실	㎡	판매실	㎡		
	격리실	㎡	-	㎡		
동물생산업	건물소유구분	[]자가 []임대	취급 동물의 종류			
	사육실	㎡	분만실	㎡		
	격리실	㎡	판매실	㎡		
	건물소유구분	[]자가 []임대	취급 동물의 종류			

3. 영업실적(동물장묘업·동물판매업·동물수입업·동물생산업)

구분	동물장묘업 처리 두수			동물판매업 (경매장 포함)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생산두수 보유현황			생산 두수	월판매 두수
	개	고양이	기타	축종	품종	판매 두수	축종	품종	수입 두수	수입국	축종	품종	두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4. 비고